원양산업 종합정보 모잠비크편

목 차

제1장 모잠비크 일반현황	1
제1절 개요	3
제2절 경제동향	6
제3절 정치사회동향	9
제2장 모잠비크 수산업 현황	15
제1절 일반현황	17
제2절 어업별 현황 2	21
제3절 유통 및 가공 ;	30
제4절 어획 후 이용 ;	34
제5절 수산업 기관 및 법률 체계	36
제6절 주요 수산업 관리제도	38
제7절 기타 수산업 통계	41
제8절 모잠비크 수산법	42
제9절 모잠비크 ODA 현황	45
제3장 모잠비크 투자가이드	49
제1절 투자환경 ;	51
제2절 투자법 및 조세제도 !	55
제3절 수산업 투자환경 (60
부 록 '	71

Chapter



모잠비크 일반현황

제1장 모잠비크 일반현황

제1절 개요

- O 1975년 포트투갈로부터 독립, 1977~1992년까지 내전을 거쳐 1994년 최초로 복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직선대통령 선출.
- O 1992년 내전 종식 후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지속,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개발 동력확보.
- 정치안정, 경제개혁, 부채탕감 및 선진국 원조의 수혜로 고성장 하였으나 인구 절반 이상은 빈곤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최빈농업국에서 벗어나지 못함.
- O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역불균형, 신용등급 강등, 경제성장률 하락, 현지화 가치 폭락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2016년 경제성장률 3.4%로 극심한 침체, 국영기업 외화차관 상환능력 상실로 외화 잔액 증가추세, 2016년 화폐가치 하락율 33.2%.
- O 1992년 평화협정 이후에도 야당과 여당 분쟁 지속, 2014년 대선과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였으나 야당이 불복하여 충돌이 간헐적으로 발생, 치안 불안 상황 지속.
- 야당은 중북부 6개주 자치를 요구, 여야 협상은 2015.8월 중단된 상황으로 중북부 지역 분쟁이 지속되어 난민이 만여명에 달함.
- O 2017년부터 천연가스 개발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되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 장기적으로 최빈국을 탈피하고 중소득국으로 진입할 전망.
- 2017년까지 해상4광구, 해상1광구 최종투자결정 완료, 본격적인 가스생산 준비에 돌입할 예정.
- 천연가스 개발 관련 향후 10년 투자 예상규모는 1천억 달러로 2023년에 세계 3위 LNG 수출국으로 변모, 중소득국으로 진입할 전망.

<표 1-1> 모잠비크 약황

	일반사항			
국 명	모잠비크공화국(Republic of Mozambique)			
수 도	마푸토(Maputo)			
인 구	2,891만명('16년 기준)			
면 적	799,380km(한반도 약3.6배), 해안선 2,470km			
민 족	Makua족, Shangaan족 등 원주민이 99% 차지, Eurafrican(0.2%), Indians(0.08%)			
종 교	가톨릭28%, 개신교28%, 무슬림18%, 기타 7.2%			
언 어	포르투갈어(공용), 여러 토속어			
독 립	1975.6.25			
	정치현황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의회구성	단원제(250석, 5년 임기)			
주요인사	- 대 통 령 : Filipe Jacinto Nyusi(뉴지) - 총 리 : Carlos Agostinho do Rosario - 외교장관 : Oldemiro Baloi			
외교노선	친서방 및 중립노선			
	경제현황			
GDP	147억불('15)			
1인당 GDP	1,192불('15)			
경제성장률(GDP)	3.6%('16)			
무역규모	89억불 - 수출 : 30억불(알루미늄, 새우, 면화) - 수입 : 59억불(기계류, 차량, 유류)			
화폐단위	Mozambique Meticals(MZN) (\$1 = MZN 67.27)('16)			
	우리나라와의 관계			
수교일자	1993.8.11			
공관현황	- 아국 : 2대 김흥수 대사('16.6.29 신임장 제정) - 상대국 : 駐일본대사 겸임			
수출입현황	7,937만 불('15) - 수출 : 6천 7백만 불(화학, 기계 공업제 등) - 수입 : 1천 1백만 불(석탄, 구리, 담배 등)			
투자현황	14건, 4,306만불('15 누계, 수은)			
ODA현황	9,242만불('87-'13)			
재외국민 현황(16.2)	200여명 - 재외동포: 25세대 57명(제조, 선교, 잡화판매) - NGO 및 선교사 : 40여명 - 지상사 직원 : 200여명			

자료 : 주 모잠비크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 EIU

[그림 1-1] 모잠비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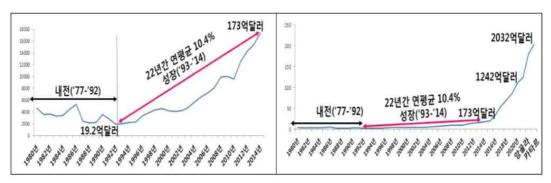
제2절 경제동향

- O 1977~1992년까지 지속된 내전으로 인한 최빈국, 고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빈곤 지속.
- 1975년 독립 시 모잠비크는 사회주의 정책, 경제관리 미숙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1977~1992년 내전으로 더욱 빈곤해졌음.
- 1987년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련의 거시 개혁에 착수하였고 1994년 복수정 당 선거를 통한 정치적 안정과 부가가치세 도입 및 세관 개혁 등을 포함한 재정개혁으로 정부의 세입이 크게 향상되었음.
- 1992년 내전 종식 후 정치안정, 경제개혁, 부채탕감 및 선진국의 원조 등에 힘입어 22년 간 연평균 10.4% 성장.
-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반 이상은 빈곤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노동자의 대부 분이 생계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빈 농업국.
- O 세계 9위 가스 매장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개발 동력을 확보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투자 지연.
- 2014년까지 확인된 모잠비크 가스매장량은 2.8tcm(EIA), 지속적인 해상 가스전 개발에 따른 총 매장량은 5.3tcm으로 세계 9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가스개발에 따른 혜택은 정부의 세수 확대 외에도, 비료, 암모니아, 메탄올, 석유화학, GTL 등 제조업 육성과 항구,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개발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태국, 한국 가스공사 등 아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은 가자주 티타늄 광산 개발 계획(4.7억 달러)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 중임.
- O 무역 불균형 지속, 신용등급 강등, 경제성장률 하락, 현지화가치 폭락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2016년 경제 성장률은 3.4%로 극심한 침체.
- 최근 Mozal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지속, 이는 자원개발 관련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 확대 때문으로 분석됨.
- 주요 수출 품목은 알루미늄, 액화천연가스, 티타늄 등 원자재로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 드, 남아공, 인도, 미국, 중국, 포르투갈임.

-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알루미나 원료, 차량, 석유 등으로 주요 수입국은 남아공, 중국, 인도, 네델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바레인, UAE, 일본, 미국임.
- 고채무저소득국(HIPC) 및 다자국제금융기구 채무구제(MDRI)를 통해 대규모 외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채 잔액은 증가추세임.
- 2013년 국영 다랑어기업 Ematum은 다랑어선박 구매 등을 목적으로 8.5억불 규모의 채권을 발급하였고 정부가 전액 보증하였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2016년 4월 모잠비크 정부로 채권자 변경, 상환 연장, 금리 인상 등을 주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거친 바 있음.
- 2017년 1월 규모 7.27억 달러의 정부채무 관련 이자 5,976만 달러는 지급할 수 없다고 채권단에 통보하는 등 채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무디스는 2017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며 신용등급을 Caa3으로 강등시킴.
- 모잠비크 화폐 메티칼(MZN) 대달러 환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5년 화폐가 치 하락율은 20%, 2016년은 33.2%를 기록하며 2016년 화폐가치 하락률 전 세계 5위를 차지.
- 최근의 급변동은 모잠비크의 주수출품인 원자재의 국제 시세 하락, 국영다랑어기업 Ematum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천연가스 투자지연, 세계적인 달러강세 등 악재가 겹친데 따른 것임.
- 환율의 급변동은 민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 지체, 생필품 가격 인상을 초래함.
- O 2017년부터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되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최빈국을 탈피하고 중소득국으로 진입할 전망.
- 2017년 재정 목표는 정부 수입 1,831억 메티칼, 지출 2,722억 메티칼로 재정적자 폭은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성장 목표는 5.5%로 석탄가격 인상 및 생산 확대에 따른 광업 성장(24%) 등을 포함, 정부 우선 과제는 식량 증산, 메티칼화 가치 방어, 거시경제 안정 등임.
- ENI 주도의 해상4광구와 Anadarko 주도의 해상1광구는 2017년까지 최종투자결정(FID)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스생산 준비에 돌입할 예정, 2020년 생산개시 후 모잠비크 GDP에서 액화천연가스의 비중은 2023년 30%, 수출은 50%를 차지할 전망임.
- 천연가스 개발로 LNG기지, 비료, 암모니아, 메탄올, 석유화학, GTL 등 제조, 플랜트와 항구,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전반에 투자가 유입될 전망.
- 기개발이 진행 중인 천연가스와 석탄 외에도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보크사이트, 탄탈라이트, 에메랄드, 금, 루비, 석회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였으며 지질 정보 부족,

관련 법령 미비, 정부기관 역량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미개발 상태의 광물자원이 많아 외국 자본들의 관심이 높음.

- 천연가스 개발 관련 향후 10년간 투자 예상규모는 1천억 달러로, 모잠비크는 2023년에 세계 3위 LNG 수출국으로 변모, 연평균 20%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최빈국을 탈피하고 중소득국으로 진입할 전망.



자료: IMF, Sptec Advisory. (재인용: 2016 모잠비크 진출전략, Kotra, 2015.)

[그림 1-2] 모잠비크 GDP 추이 및 전망

제3절 정치사회동향

- O 모잠비크는 1990년에 제정된 헌법 하의 다당제 민주주의로 행정부는 대통령, 수상, 각료 이사회로 구성되고 국회와 시의회도 존재, 사법부는 대법원과 주법원, 지방법원, 시법원 으로 이루어짐.
- O 국회 의석수는 250석, 선거방식은 5년 단위로 대선·총선 동시 실시, 각 정당이 획득한 유효득표의 비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다만, 최소한 유효득표의 5% 획득 필요).
- O 모잠비크의 전국단위 지방선거는 10개주(대통령이 주지사 임명)를 제외한 35개 도시 및 군에 대해 5년 단위로 실시되며, 10개주의 지방의회 18개 선거구(1,216석)에 대한 선거 (정당 투표)도 동시에 실시됨.

1. 정치문화

연도	내용
1498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다가마, 모잠비크 해안 도착
1500년대	포르투갈인 진주(이전까지 아랍 영향권)
1600년대	인도 무역상인 진주
1875	포르투갈, 영국과의 마푸투항 소유권 분쟁 승리
1891	영국, 포르투갈의 모잠비크 지역 소유권 인정
1930년대	포르투갈, 중앙집권적 식민지배체제 확립
1962	모잠비크해방전선(FRELIMO) 결성(3개 민족주의 정당 통합)
1963	포르투갈 영토로 편입
1964	FRELIMO, 반식민 게릴라전 개시
1975	모잠비크 독립, 사모라 마셀(Samora Machel) 초대 대통령 취임 모잠비크국민저항(RENAMO) 결성
1977	FRELIMO, 일당독재국가 선언 및 사회주의 경제정책 시행 FRELIMO-RENAMO 간 내전 돌입
1984	모잠비크-남아공 불가침조약 체결(Nkomati 조약)
1986	사모라 마셀 대통령, 비행기 사고로 사망, 조아킴 시사노(Joaquim Chissano) 2대 대통령 취임
1989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가입 FRELIMO, 당 규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삭제
1990	헌법 개정(대통령 직선제, 다당제, 시장경제 도입 등)
1992	FRELIMO-RENAMO 간 평화협정 체결, 내전 종료

연도	내용
1993	유엔 평화유지군 진주(1995년까지 활동)
1994	시사노 대통령 당선, FRELIMO 총선 승리
1995	영연방 가입
1996	포어권국가공동체(CPLP) 창설국으로 참여
1998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탈퇴
1999	시사노 대통령 재선, FRELIMO 총선 승리
2000	RENAMO 주도 전국시위 발생, 경찰진압으로 약 120명 사망
2004	아르만두 에밀리우 게부자(Armando Emilio Guebuza) 3대 대통령 당선, FRELIMO 총선 승리
2006	포르트갈과 카호라 바사(Cahora Bassa) 댐 소유권 인수협정 체결
2007	IMF 양허성차관 지원대상 국가 졸업
2009	게부자 대통령 재선, FRELIMO 총선 승리
2014	필리페 뉘우지(Filipe Nyusi) 4대 대통령 당선, FRELIMO 총선 승리

자료: KOTRA

- O 포트투갈로부터 독립, 내전, 직선대통령 선출.
- 1975년 6월 25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모잠비크 해 방전선(FRELIMO) 일당독재체제 구축과 친공산주의 정책을 추진.
- 반혁명 무장세력인 모잠비크 국민저항연합(RENAMO)이 1977년 결성되어 남아공 군부의 지원하에 내전을 일으켰으며, 양당은 이탈리아 정부의 주선으로 1992년 10월 4일 로마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6년에 걸친 내전 종식(내전기간 중 100만여명 사망).
- 1990년 다당제, 시장경제, 자유선거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대통령 중임제가 확정 되었으며(제118조 제5항),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 임기종료 후 5년 뒤 선거에 재출마 가 능(제118조 제6항).
- 1994년 모잠비크 최초로 복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 실시, 조아킴 시사노(Joaquim Chissano) 대통령이 53.3%를 획득하여 당선되었고 동시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250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 129명은 FRELIMO, 112명은 RENAMO, 9명은 민주노조(DU)를 구성하는 3개의 군소 정당 소속임.
- O 1994년 선거 전후로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정부분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내며 기존 여당(FRELIMO) 지속 승리.
- 시사노의 대통령 당선 이후 반군세력의 간헐적인 게릴라전이 전개됐으나 정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시사노 대통령은 1998년 RENAMO 반군의 거점을 방문하는등 내전 후유증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였음.

- 1998년에는 시 수준의 지역 대표와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첫 번째 지방 선거를 실시, 주요 야당인 RENAMO는 지방 선거를 보이곳하며 등록 과정의 결점을 발표하였으나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 운동에 참석하며 시 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하였음.
- 1999년 선거에서 시사노 대통령은 RENAMO-EU의 후보자였던 아폰소 드라카마(Afonso Dhlakama)에 4% 앞서 2000년 1월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였음. FRELIMO-EU는 국회에 서 250석 중 133석, RENAMO는 116석을 차지하였음.
- 제2차 지방 선거는 2003년 11월에 실시되었고 투표인은 3개 지방 2.4백만명으로 24% 의 득표율을 기록, 제1차 기초의원선거의 15%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FRELIMO와 RENAMO-EU, 독립당이 특별한 보이콧 없이 경쟁한 첫 번째 선거로 폭력사건 없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짐.
- 2004년 실시된 대통령 및 국회 선거에서 FRELIMO의 새로운 후보인 아르만두 게부자 (Armando Guebuza)는 일반 투표에서 64%로 승리하였고 2009년 75%의 득표율로 재선되었음.
- O 2013년 군사적 긴장상태 강화, 2014년 총선 FRELIMO 승리하였으나 RENAMO가 불복함에 따라 지속적 소요사태 발생
- 2013년 4월에는 정부군의 RENAMO 기지 공격, 그리고 RENAMO의 경찰서 공격, 2013년 10월 18일, RENAMO 무장대원들이 정부군 기지를 공격해 정부군 7명을 살해, 10월 21일 정부군은 들라카마 의장이 거주하는 RENAMO 기지를 장악.
- RENAMO는 1992년 로마평화협정 폐기를 선언하였고 계속된 분쟁 발생.
- 2014년 8월 말, FRELIMO와 RENAMO는 평화협정을 맺기로 합의했고, 이어 9월 5일에는 2012년 마푸투로 거처를 옮긴 후 두문분출하던 들라카마 의장이 공개 석상에 나타나게부자 대통령과 평화협정에 서명하였음.
- 2014년 선거 결과, FRELIMO 후보 필리페 뉘우지(Filipe Nyusi)가 57.03%으로 당선되었고 FRELIMO 144석, RENAMO 89석, MDM 17석 기록함.
- RENAMO는 자체조사 결과 Dhlakama 후보가 80%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RENAMO는 139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모든 결과를 부정한다고 발표하며 중북부 지역 자치를 요구함.
- 여당 FRELIMO와 야당 RENAMO의 정치 협상은 상호 신뢰 부족 및 협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대통령 및 여당은 전제조건 없이 협상을 개최하고 싶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6개주 통치 개시 후 중재자들의 중재 하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 고수.

- 모잠비크 국회가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 협상은 2015년 8월 중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6년 1월 7일 RENAMO 당수인 Afonso Dlakama는 중북부 6개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재차 발표하고, 1월 11일에는 남아공 Zuma 대통령, 가톨릭 지도자 등을 새로운 정치 협상 중개자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최근 정부군과 야당 무장세력간 무력 충돌을 피해 인근 말라위로 간 난민이 201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만여명에 달한다고 함.



자료 : alluringworld

[그림 1-3] 마푸토 시청

2. 외교 관계

O 모잠비크 외교 정책의 두 축은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와 개발원조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및 확장이었음.



자료 : japanvisitor

[그림 1-4] 모잠비크 대사관(일본 겸임)

- 남아공, 짐바브웨, 말라위, 잠비아, 탄자니아 등 접경국들과 관계는 굳건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는 1984년 은코마티 협약(Nkomati Accord) 이후 1993년 10월 완전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였음.
- 주변의 짐바브웨, 말라위, 잠비아, 탄자니아와 관계에서 종종 압력이 있었으나, 동국들과 의 모잠비크 관계는 굳건하였음.
- 소비에트 연방과 동맹국들은 모잠비크의 주요 경제, 군사, 정치적 지지자들이었고, 외교 정책은 이러한 연결성을 반영하였지만 1983년 변화하기 시작하여 1984년 모잠비크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였음.
- 소비에트의 원조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원조로 바르게 대체되었고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개발 원조 분야에서 점점 중요해졌음.
- 또한 이탈리아는 평화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포르투갈 투자자들이 모잠 비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포르투갈과의 관계도 점차 중요해졌음.
- 모잠비크는 비동맹운동과 UN 및 기타 국제기구의 아프리카 회원국 중 온건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아프리카 연합(前 아프리카 통일 기구)과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ADC)에 소속되어 있음.
- 1994년 이슬람 회의 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는 국제적 지지를 위한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상당한 규모의 이슬람 교도를 위한 것이었음.
- 1996년 초 주변의 영어 사용국과 함께 영연방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포르투갈어 사용 국 공동체(CPLP)의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국이 되었으며, 기타 포르투갈어 사용국들 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 최근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과 원조, 무역, 투자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3. 행정 구역

- 모잠비크는 10개의 주(*Provincias*)로 구분되어 있고, 주 수준의 수도가 1개(*Cidade capital*) 있으며 주는 129개 구역(*Distritos*)으로 세분화됨.
- O 동 구역은 405개 "Postos Administrativos"와 더 세밀하게는 Localidades로 나뉘며, 이는 중앙 행정에서 가장 하위의 지리적 단위로 1998년부터 모잠비크에 53개의 "Municípios"(지방 자치제)가 신설되었음.

- 1. Niassa
- 2. Cabo Delgado
- 3. Nampula
- 4. Tete
- 5. Zambezia
- 6. Manica
- 7. Sofala
- 8. Gaza
- 9. Inhambane
- 10. Maputo (도시)
- 11. Maputo



자료 : wikipedia



자료 : wikipedia

[그림 1-5] 마푸토 전경, 모잠비크 수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마푸토 시는 마푸토 주에서 독립하였음.

O 모잠비크의 구역은 405개 Postos로 나뉨.

- Postos administrativos는 주요 구역임. 동 용어는 식민지 시대에 사용되었으며, 독립 이후 폐지되어 localidades로 대체되었으나 1986년 부활하였음.
- Postos administrativos 구역의 대표는 Secretários이며, 독립 이전에는 Chefes de Posto 로 불렸음.
- Postos administrativos 구역은 localidade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동 지역의 대표 또한 Secretários.

Chapter

2

모잠비크 수산업 현황

제2장 모잠비크 수산업 현황

제1절 일반현황

1. 수산업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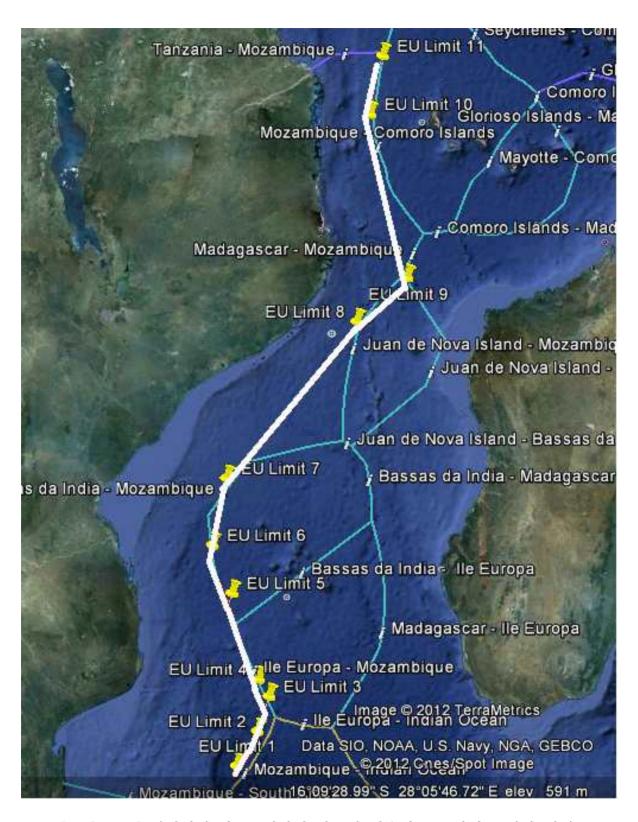
- O 모잠비크에서 수산업은 단백질 공급 및 수출에 있어 중요한 산업임.
- 평균 수출량 12천톤, 수출금액 75백만 US\$, 수입량 70천톤으로, 알루미늄 수출 이전에는 수산물이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2kg이며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60% 차지.
- O 연안 지역에서는 새우 및 기타 저서어류를 주어종으로 산업, 준산업, 영세어업이 이루어 지며 EEZ 내 원양에서는 자국 연승 선박과 외국 선망 및 연승 선박이 다랑어 및 황새치 등 고도 회유성 어종을 어획함.
- O 다랑어, 심해새우, 두족류, 소형 원양종(전갱이 등), 오징어 등이 유망한 어종이나 수산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해양수산 통계도 부재함.
- (다랑어류) 잠재적 생산량 100만톤, 생산량 15천톤, 허가 선박 73척.
- (심해 갑각류) 잠재적 생산량 3,100톤, 생산량 1,700톤, 허가 선박 15척.
- (소형 원양종) 잠재적 생산량 85천톤, 생산량 60천톤.
- (두족류) 잠재적 생산량 10천톤, 생산량 없음.
- O 어항, 어선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수많은 영세어 선 중 3%만이 선외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 O 모잠비크의 내수면 양식업은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유망한 분야이나 양어 사료가 중요한 문제.
- O 정부는 어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양식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O 모잠비크는 지난 2010년부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산 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불법 어업을 규제하고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증진하는 등 수산업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O 모잠비크는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추구하며, 향후 어업 관련 하여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람.
- 이와 관련,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장관은 교육사업 참여 등으로 방한 시 수산관련 정부간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함.

2. 해양구역 및 경계

- O 모잠비크는 2,800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음.
- O 해양 영토 분쟁으로 해양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UN해양법협약(UNCLOS)에 기초할 수 있으나 영토 분쟁부터 해결되어야 함.
- 모잠비크 EEZ는 탄자니아,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프랑스령 제도, 남아공 등 5개 국가와 맞닿아 있음.
- 1988년 마푸토에서 탄자니아와 경계획정 협약(Maritime Boundary agreement)을 체결하여 1993년 7월에 발효되었으나 완전하지 않으며 프랑스와의 해양 영토 분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 O EU와 수산협정(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 의정서 상 경계수역이 있으나 이는 협정하에 조업하는 EU 어선을 관리하기 위한 수산법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함.
- 의정서에 따른 EEZ는 약 572,000km², 인접국인 마다가스카르의 EEZ 구역은 약 1.2백만km², 세이셸의 EEZ는 약 1.3백만km²l).

¹⁾ 자료: Sea Aroudn Us Project http://www.seaaroundus.org/



[그림 2-1] 어업협정 상 EU선박의 활동에 적용되는 모잠비크 어장 경계. 굵은선: 2012.6월 이전 경계선. 가는선: 2012.6월 이후 경계선. 자료: 모잠비크 수산부

3. 어류자워

- O (갑각류) 천해 새우는 White shrimp(Penaeus indicus), Brown shrimp(Metapenaeus monoceros)가 주요 어종이고 심해(200m 이상) 새우 주요 어종은 Haliporoides triarthrus vniroi(Gamba rosa)와 Aristaeomorpha foliacea(Gamba vermelha)이며 상업적으로 중요한 가재, 게, 심해 갯가재도 있음.
- O (소형 원양 어종) Anchovy, Barracuda, Driftfish, Jack mackerel, Ponyfish, Sardine, Scad 가 있으며 이러한 소형 원양 어종은 주로 대륙붕(200m 이하)에 제한되어 있음.
- O (저서 어류) 대륙붕에 주로 서식하고 주요 어종은 Snapper, Goatfish, Threadfin, Grunt, Croaker, Lizard fish이며 영세 어민이 어획함
- O (원양 어종) EEZ에서 발견되는 대형 원양 어종은 다랑어류(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Billfish(Swordfish, Black marlin, Indo-Pacific blue marlin), 기타 다랑어류로 Rainbow runner, Dolphinfish 등이 있음.
- O Spanish mackerel, Kawakawa, Bonito, Wahoo, Seerfish도 존재하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Blue shark, Sortfin mako 등 원양 상어 종도 서식하고 있으며 기타 상어 종은 Thresher shark, Various requiem shark가 있음.
- O 또한 원양의 저서어류, 상어, 가오리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정보는 제한적임.

4. 생산현황

- O 2010-2019 수산 기본계획에는 최대 어획 가능량을 218,000~332,000톤(이전의 1995 기본계획 추정량인 390,000톤보다 낮음)으로 설정하였음.
- 천해새우, 갯가재, 게, 대륙붕의 저서어류 등은 과도하게 어획되고 있다고 평가됨.
- 심해새우, 게, 소형 원양 어류는 과소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됨.
- O 연간 총 어획량 212천톤(외국인 참치어업 제외)으로 추정되며 이 중 145천톤(68%)은 해양에서, 67천톤(32%)은 내수면에서 어획됨.
- 5년간 총 어획량(내수면 및 해양)은 2007년 115,000톤에서 2012년 약 212,00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해양 분야에서 영세어업 생산량은 약 133,000톤(91%), 산업 및 준산업은 12,000톤으로 추정되며, 준산업 및 산업 트롤선의 연안 새우 어획량은 201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

<표 2-1> 모잠비크(2010~2012)의 어류 생산(톤) 추정량. 자료: 모잠비크 수산부, 2013

Tonnes	2010	2011	2012
Commercial fisheries	21,361	27,128	26,619
Lobster	98	204	192
Crabs	208	82	50
Gamba	1,261	1,288	1,899
Fishes	1,528	1,238	6,066
Shrimps	5,675	4,622	2,518
Deepwater lobster	94	145	130
Cephalopodes	89	103	115
Kapenta	11,518	18,330	13,707
Sharks	3	1	54
By-catch	887	1,115	1,723
Tunas and other large pelagic fishes	0	0	165
Artisanal fisheries	141,194	166,428	186,214
Lobster	166	211	225
Crabs	734	1,270	1,350
Marine fishes	86,828	99,452	115,269
Fresh water fishes	33,318	55,094	53,515
Shrimps	4,320	1,858	3,360
Acetes	2,458	2,316	2,016
Cephalopodes	1,234	1,265	2,035
Sharks	369	431	489
Others	2,920	1,131	4,816
By-catch	8,847	3,400	3,139
Total catches	162,555	193,556	212,833

제2절 어업별 현황

1. 해면 어업

- O 해면 어업의 평균 어획량은 약 120천톤으로 영세어업이 80%를 차지함.
- 주요 해양 자원은 갑각류(Prawn, Deepwater shrimp, Crayfish, Lobsters, Crabs), 어류(주로 Grouper, Snapper, Emperor, Sea bream 등의 저서 및 부어류, Yellow fin, Big eye, Albacore, Swordfish, Shark 등의 고도 회유성 다랑어), 두족류 및 연체류(Squid, Octopus, Sea cucumbers, Bivalves)가 있음.

- O 모잠비크 어업 대부분은 해양에서 이루어짐.
- 대형 선박의 산업용 어업: 모잠비크는 중국, 일본, 스페인 등 외국 수산 업체와 협력하여 어획하며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됨.
- 중형(10~20m) 선박의 준 산업용 어업: 대부분의 선박이 트롤 어업으로 새우를 어획하 거나 주낙으로 어류를 어획하고 있으며, 수산 업체들은 현대화된 선박이나 장비 부족으로 어획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소형 선박의 영세 어업: 소규모 단체나 개인이 어업을 하는 어촌에 산재, 어획물 중 일부는 생산자가 소비하고 일부는 판매, 일부 선박에는 선외기가 설치되어 있음.
- O 모잠비크에서 상업적으로 조업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영세어업 허가에도 수수 료가 부과되나, 생계 목적의 조업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세금이 면제됨.

<표 2-2> 어업 부문별 비교(개괄)

	영세	준 산업용	산업용
선박 길이	10m 미만	10~20m	20m 초과 선박
어구	손으로 쓰는 낚싯줄	낚싯줄, 자망, 트롤	낚싯줄, 자망, 트롤
조업	지인망이 가장 흔하며 소형어류 어획, 좀 더 큰 어류에는 낚시줄을 이용함.	심해어류	심해어류
선박 기술	대부분 비동력어선으로 몇몇 선박만이 선외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돛을 사용함.	얼음이나 제빙기가 설치된 선박	제빙기 및 냉동 설비가 설치된 선박, 바다에서 20~30일 체류 가능.
가공	선어나 일광 건조, 훈제된 상태로 판매됨	육지의 가공처리 공장	대부분의 어획물은 해상에서 가공 및 포장됨
시장	현지 소비	현지 소비 및 수출	외국으로 수출
위치	연안 지역이나 만, 하구, 내수면에 접한 모든 영역에 존재함.	주요 연안 도시나 접근성이 높은 도시, 새우는 소규모 공장에서 가공되어 바이어를 통해 수출됨.	산업용 선단의 주요 항구는 Quelimane, Beira, Maputo.
일자리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 (50,000명 추정)	근로자 1,550명 (80%가 모잠비크 국민)	
연령 및 성별	여성이나 어린이가 주로 채집하거나 선박 없이 어업에 종사함	남성	남성

자료: World Fisheries Trust

<표 2-3> 어업 부문별 비교(상세)

부문	선박	선원	주요 어구	어획물, 조업, 기간 관련 기타	
영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손으로 쓰는 낚싯줄, 지인망	영세 어업은 모든 연안 지역에서 다양한 어구로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고, 모든 어종을 타깃으로 하며 공식적으로	
2012년	3m 미만 카누(노)			라이선스를 발급받음.	
어선 수는 39,550대였으며, 약 88%는	3~8m 선박(노/돛)	1~6	손으로 쓰는 낚싯줄/통발, 지인망, 자망,	주요 어종은 조업이 이루어지는 해안 이나 어귀에서 소형 원양어종 및 소형	
카누(IDPPE 2012).	5~10m 선박(선외기)		선망, 연승	저서어류,	
2012).	5~8m 스키보트	3~6	낚싯대 + 낚싯줄	어획물 보존 및 냉동 시설은 없음(최대하루 조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낚싯대 + 낚싯줄	국내 레크리에이션 어업은 여가나 국 내 식량 보급 목적으로 조업하나 보고 되지 않은 어업이 있음.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어업	5~8m 스포츠용 스키보트	2~6	막대 + 낚싯줄	스포츠 어업은 더욱 조직화 되어 소 된 조직은 보통 어민 윤리에 대한 기	
	5~8m 작살 스키보트	2~6	작살	을 정하고 있음. 스쿠버 장비 없이 잠수, 특정 어종을 타깃으로 작살총을 이용하여 어획하는 어업 포함.	
				어획물은 원양 어종으로만 구성됨.	
준 산업 월평균 21척의 선박이 조업	10~20m	10~1 5	낚싯대 + 낚싯줄/ 손으로 쓰는 낚싯줄	어획물은 주로 대형 저서어류 조업은 연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조업 활동에 정식 허가가 필요하며, 어 획물 냉동(7~12일간 조업), 항구 기반 활동	
산업 월평균 조업선 2척	20m 초과 선박	15~3 0	낚싯대 + 낚싯줄/ 손으로 쓰는 낚싯줄, 연승	조업은 연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며, 공식허가 필요, 손으로 낚싯줄을 이용 하는 선단은 저서어류를, 연승선은 다 랑어나 유사 어종을 타깃으로 함. 항구 기반으로 어획 냉동을 통해 30일	
				까지 조업함.	

자료 : World Fisheries Trust

<표 2-4> 어업 부문별 허가 비교

어업 부문	어구	2011년 허가 수	2012년 허가 수	2013년 허가 수	2014년 허가 수	비고
	지인망	-	9,042	9,916		
	손으로 쓰는 낚싯줄	-	12,683	13,853		영세 어업의 통계에 기반을 둔 정보(IDPPE
영세	자망	_	14,817	20,396		2012)로 연안 지역만
	연승	_	678	1,077		참고.
	선망	-		563		
준산업	Sofala bank ²⁾ 천해 새우	15	14	22	1	
	낚시어업	23	41	37	31	
21.01	Sofala bank 천해 새우	51	57	44	35	
산업	낚시어업	2	2	3	3	
	원양 연승 다랑어	1	1	0	2	

자료 : IOTC

- O 산업형 어업은 Sofala bank에서 새우 트롤 어업, 대륙붕에서 심해 새우 트롤 어업, 암반에 서식하는 어종에 대한 주낙어업을 하고 있으며 최소 4,500명의 어민이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됨.
- 천해새우는 대부분 수출되며, 2개 합작사, Pescamar(모잠비크 정부-스페인 업체 합작사), Efripel(모잠비크 정부-일본 합작사)에서 주도함.
- Sofala bank의 새우 트롤어업은 Penaeid shrimp를 주어종으로 어획하고 있고 부수어획률(70~80%)이 높으나 가치가 낮은 저서어류는 다량 폐기되고 있음. 3천톤이 어획되었고 선상에서 포장 및 냉동되어 주로 유럽 및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연간 가치는 40~50백만 유로 정도임.
- 심해 새우(Gamba) 트롤어업은 600m까지의 대륙붕 사면에서 이루어고 어획물은 선상에서 가공 및 냉동되어 육지에서 2차 가공된 후 유럽이나 남아공으로 수출됨. 해외
- 산업형 주낙 어업은 깊이 25~200m의 전 연안에서 Bream, Snapper, Kingfish, Carangidae 등 암반에 서식하는 저서어류를 타깃으로 하고 국내선이 어획한 후 선상에서 내장을 제거, 냉동하여 대부분 선어 상태로 남아공에, 일부는 유럽으로 수출하며 가치가 낮은 제품은 현지 시장에서 판매함.

²⁾ Sofala 해안에서 80nm(148km) 거리에 대륙붕으로 이루어진 평균 깊이 20m의 모잠비크 주요 지층

- O 산업형 다랑어 어업 총 생산량은 3,349톤으로 국적 연승선과 허가에 의한 외국인 선박의 어업으로 구분됨.
- 모잠비크 국적 연승선은 2014년 2척, 2015년 9척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총 어획량은 270.5톤(일부 선박은 연중 도입되는 등 낮은 어획률을 기록)으로 2014년 7.5톤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산업형 다랑어 선단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음.
- 2014년 외국 선박은 선망 22척, 연승 34척이 허가를 받았고 3,065톤 어획, 2015년에는 3,079톤을 어획함.
- 다랑어 어업 관련, EU와 수산 파트너쉽 협약 체결(2012.2.1~2015.1.31), EU에서는 980,000€ 재정지원하고 그 중 모잠비크 수산정책 지원에 460,000€를 지원하며 동 협약으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선박이 모잠비크에서 어획하였으나 현재휴면협정이 체결되어 동 협약에 의한 입어는 중지된 상황임.

<표 2-5> 2007~2014년 외국 선박의 다랑어 조업 허가 수

연도	선망	연승
2007	51	110
2008	47	75
2009	41	70
2010	34	37
2011	34	39
2012	23	35
2013	18	27
2014	22	34

자료: ADNAP(모잠비크 수산청)

		, , _		10 111		10 /	, , , ,	
어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다랑어	641	2550	1942	2345	1162	249	21	12
날개다랑어	541	341	106	348	663	114	229	212
눈다랑어	350	322	173	374	387	154	257	361
황다랑어	3,402	2,647	824	1,613	2,280	890	2,096	2,275
황새치	218	209	721	837	463	920	590	205
다랑어	428	471	538	603	465	99	448	_
총 어획량(톤)	5,581	6,549	5,221	6,640	5,925	2,426	4,149	3,065
총 노력량			1,353	2,727	2,412	1,551	1,734	2,215

<표 2-6> 외국 선박의 주요 다랑어류 연간 어획량 및 어획 노력

자료: ADNAP(모잠비크 수산청)

(조업일수)

- O 준산업형 어업은 Sofala bank, Maputo bay, Limpopo river, Angoche 지역에서 천해 새 우를 어획하거나 연안에서 주낙 어업을 실시함.
- 남부 Sofala 새우 트롤어업은 산업용 선박의 조업이 금지된 Machaze(남위 19°47'), Beira 북부, Save 강 하구(남위 21°), 자오선 동부 35°11'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이루어짐.
- 타깃 어종은 Penaeid shrimp로 어획물은 모두 육지에서 가공되어 현지에서 판매되거나 EU, 남아공으로 수출되며 많은 부수어획물이 Chiloane 등 연안 주위의 영세 어촌에서 염장이나 건조됨.
- 연안에서 Maputo bay나 20해리까지 거리의 Limpopo 강어귀에서 이루어지는 새우트 롤 어업의 부수어획물은 Maputo시에서 선어 상태로 판매됨.
- Angoche 새우 트롤어업은 Angoche에서 Ligonha 강어귀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 주낙 어업은 21°에서 남쪽으로 연안에서 30해리 내 수심 20~150m 구역에서 이루어지고 타깃 어종은 기본적으로 산업용 어업과 동일하게 저서어류로 수출되거나 현지 시장으로 유통됨.
- O 영세어업 어선 대부분이 무동력이고 길이는 3~8m, 3% 정도는 선외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구는 지인망, 자망, 연승 사용, 전 연안을 따라 이루어지나, 특히 Nampula, Zambezia, Sofala, Inhambane, Maputo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짐.
- 2007년 해양 영세어업에 대한 총조사에 따르면 어민과 영세 어업에 직간접적으로 의존 하고 있는 사람 수는 1,217개 어촌에 334천명이 분포되어 있음.
- 이 중 280천명은 영세 어민으로 이 중 41%는 다양한 선박을 이용하고, 43%는 선박을 소유 및 이용하지 않음.

- 이러한 어민뿐만 아니라 가공업자, 영세 선박 목수, 어망 제작자, 선박 정비공, 어구 및 설비 판매업자 등이 있음.
- 영세 어민은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18%는 Beach trawl net, 23%는 Hand line, 42%는 surface gill net을 사용하고 있음.
- 어업 활동에 선박 약 39,400척이 영세 사용되며, 이 중 약 77%는 카누, 9%는 Moma 카누³), 6%는 래프트⁴), 6%는 소형 보트. 선외기를 설치한 보트 비율은 3%임.
- 2012년 수산부는 해양 구역에서만 약 32,400개 어구(2007년 총조사) 중 11,400개 어구 에 허가증을 배부하였음.

<표 2-7> 영세어업 개괄

선박 길이	10m 미만
어구	낚싯줄, 자망, 통발
어법	영세어업에서 가장 흔한 어법은 소형 어류 어획을 위한 지인망. 소형 어류는 내수 소비용으로 지방이나 교외 도시로 판매됨. 대형 어류는 낚싯대(hook and line)로 어획됨. 이러한 어류는 대부분 냉동 및 얼음으로 저장하여 대도시로 보내짐.
선박 기술	선박 중 약 3%는 선외기를 설치하였으나 대부분 선박은 노나 돛을 사용함. 또한 본 어업의 40%는 선박 없이 이루어짐.
판매	선어, 일광 건조, 훈제 상태로 판매됨.
어업 위치	연안 지역이나 만, 하구, 내수면에 접한 모든 영역에 존재함.
일자리	모잠비크 수산업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
	여성과 어린이가 주로 선박 없이 "채집"함.
연령 및 성별	중앙 및 북부 지역의 여성은 채집하거나 매우 드물게는 상업적 어업에 종사함. 남부 지역의 몇몇 여성은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거나 시장에서 판매함.
전반적 문제점	- 기술, 장비, 자금확보 측면의 어려움 - 열악한 도로 상태: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움 - 많은 소규모 어업 주민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 및 재원이 없음
	Zambezia와 Nampula 지역은 빈곤하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Napula는 영세 어민이 많음.
	북부 연안: 산호초와 섬이 많음. 도로 상태가 열악함. 사회 복지 사업이 제한되어 있음.
지역적 차이	중앙 연안: Sofala의 풍부한 맹그로브와 농민, 영세어업은 매우 생산적임. 모잠비크에서는 많은 어류를 건조하여 판매.
	남부 연안: 모래 언덕과 관광이 주를 이루며, 영세 어민과 어류 상인은 거의 없음. 도로 상태와 인프라가 좀 더 나음.
소득층	1) 선박 및 지인망 소유자, 상업 활동을 하는 수산업자는 수익성이 좋음. 수익성이 좋은 집단은 연간 미화 \$3,300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음. 2) 영세 선박 및 지인망 업자는 연간 미화 \$120~\$400의 소득. 3) 선박이 없거나 채집하는 어민은 영세 어민 중 가장 빈곤함.

자료 : World Fisheries Trust

³⁾ Moma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오픈플로어 카누

⁴⁾ 공기를 주입하여 만든 작은 고무·비닐 보트

- O 영세 어업 IOTC 관리어종 총 어획량은 4,236톤('15년), 4,443톤('14년)으로 추정됨.
- 주요 어종은 Narrow barred Spanish mackere이 55%, Frigate tuna가 34%를 차지함.

<표 2-8> 영세 연안 어업 IOTC 관리어종 총 어획량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Yellowfin tuna	25	1	1	0	3	0	4
Skipjack	936	36	43	0	0	0	15
Bigeye tuna	684	325	321	26	2,125	0	36
Albacore tuna	125	4	6	0	16	0	75
Black Marlin	827	6	0	0	0	10	66
Indo-Pacific Sailfish	67	0	0	0	0	0	16
Swordfish	223	25	0	0	0	0	
Narrow barred Spanish mackerel	1,550	1,640	1,676	690	2,224	579	2,623
Striped marlin	0	0	11	0	0	0	
Indo-Pacific Blue Marlin	0	4	28	0	0	0	
Frigate tuna	595	332	2,551	66	444	170	1,598
Kawakawa	322	429	125	3	567	121	10
Longtail tuna	0	0	125	0	0	0	0
Total catch in tons	5,353	2,802	4,886	786	5,378	880	4,443

2008~2012 : 연안 5개주(Maputo, Inhambane, Sofala, Nampula, Cabo Delgado) 자료 취합

2013 : 연안 3개주(Inhambane, Zambezia, Nampula) 자료 취합

2014 : 7개 주 중 6개주 취합

자료: IOTC

2. 내수면 어업

- O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Niassa/Malawi 호수와 Cahora Bassa 인공호수에서 이루어지고 주요 어종은 틸라피아와 현지에서 Kapenta로 불리는 소형 부어류임.
- Cahora Bassa 호수와 Malawi 호수에서 약 20,000명의 어업인이 어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년 Cahora Bassa 호수에서 총 7,000톤 정도의 소형 부어류가 어획, 가공,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4,000톤은 영세 및 소규모 어민들에 의해 어획되고 있음.
- 소형 어종, 즉 Kapenta, Tilapia, Carps가 주요어종으로 영세 및 준산업형 선단으로부터 어획됨.

3. 양식업

- O 담수 양식은 영세/전통적 수준으로 1950년대에 시작되었고 해면 양식업은 1995년에 시작되었음.
- O 해수면 양식 주요 어종은 Black tiger prawn, Indian white prawn, Pink prawn, Kuruma prawn, Bivalves, Mud crab이 있음
- 최초의 새우 양식은 Zambezia의 중북부 지역에서 1990년대 중반에 개발되었으며, 이 지역은 6,000헥타르로 새우 양식에 매우 적절함.
- Black tiger 및 White prawn 등 새우는 주로 수출을 위해 양식되고 있고 상업적 새우 양식업은 Beira, Quelimane, Pemba에 위치하며 양어 사료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나 아시아로부터 수입됨.
- 2011년 흰반점 바이러스 발생으로 2012년 약 400톤 폐사, 600톤에서 50톤 이하로 생산 량이 급락하였으나 그 후 생산량을 회복함.
- 대표적 양식 기업으로는 프랑스 회사인 Aquapesca가 있고 동 회사도 흰반점 바이러스에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유생기에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흰반점 바이러스에 면역성이 있는 Giant shrimp의 생산을 지속하고 있음.
- 기타 중요한 양식 어종으로는 Seaweed, Bivalve(Oyster), Crabs가 있고 Seaweed 양식에 는 약 5,4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65%가 여성임.
- Mud crab 등 기타 갑각류는 넓게 분포되어 있고 Marine brown mussel은 남부 지역에 서 양식 가능성이 있으며, Sand mussel 등 기타 Mussel 어종은 북부 지역에 풍부함
- O 담수 양식은 토착 Cyclids나 Tilapia의 양식이 대부분이나, 그 외 모잠비크에서 주로 양식 되는 어종은 Nile tilapia, African catfish, Freshwater shrimp, Carps가 있음.
- 민물 양식은 주로 집약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Manica 지방의 중앙에서 이루어짐.
- 남부의 Massingir 저수지도 개발 가능성이 높으며 연간 생산량은 15,000헥타르의 지역에서 500톤 이상으로 추정됨.
- 어류 양식은 거의 대부분 토착 Cyclids, Tilapia, Genus oreochromis종의 양식이 대부분
 이고 African catfish와 Freshwater shrimp, Common carp, Grass carp, S. niloticus,
 Catfish 등 최근 양식에 도입된 외래 어종도 존재함.
- Tilapia 양식은 소규모 가두리 양식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약 100㎡의 생계형 양식장이 약 2,750개 존재하며 연간 총 900톤은 생계 목적의 소규모 수준으로 생산됨.

- O Cabo Delgado와 Napula의 연안 지역 사회는 해안에 가까운 얕은 지역에서 장대를 이용하여 해초 양식(Eucheuma, Kappaphycus)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역 양식업자의 월간 수 입은 평균 미화 60달러 정도임.
- O 정부에서는 Shrimp, Bivalves, Molluscs, Tilapia 등의 양식을 장려하고 있음.
- 어족자원 고갈 우려로 양식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양식장에 대한 기준, 필요조건, 허가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수입과 맹그로브 지역의 양식장으로의 전환을 제한하였으며, 기타 환경이나 소비자 보호 방법을 마련하였음.
- O 정부에서는 Shrimp, Bivalves, Molluscs, Tilapia 등의 양식을 장려하고 있음.
- 담수 양식은 주로 모잠비크의 식량 안보를 위한 어류 양식의 통합 시스템에 집중.
- 해면 양식은 저가의 단백질 공급원과 고가의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출 시장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으로 바다 새우 양식이 특히 주목받고 있음.

제3절 유통 및 가공

1. 처리

- O (해상 처리) 준 산업 어선에서는 주로 아이스박스에 어획된 어류를 저장하고 있으며 몇몇 어선들은 해상 냉동 설비를 갖추고 있음.
- 대부분의 어선은 아이스박스에 어획된 어류를 저장하고 아이스박스 채로 양륙하고 있음.
- 일부 선박은 해수냉각시스템(RSW)을 이용하여 어류를 어창의 해수에 보관하나 고가이고 주입구가 비늘이나 어류 부분, 매우 작은 어류에 막히면 작동이 어려움.
- O (양륙지) 양륙지에 대한 위생 기준은 충분하지 못하며 일부 양륙 및 경매는 비바람이나 동물, 새, 곤충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탁 트인 공간에서 이루어짐. 몇몇 양륙지는 어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경매장은 지붕이 덮여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어류 진열장은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함. 냉동 저장고에는 냉동기나 에어컨 장치가 없는 절연 처리 된 방으로 구성되어 야 하며, 이곳에서 어류는 냉동 및 재냉동 되어 컨테이너나 상자에 보관되고 녹은 물이 적절히 배수되어야 함. 냉동 저장고에는 기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건물 안팎만 관리하면 됨.

- O (상자) 플라스틱 소재로 제조된 어류 상자와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자루도 이용됨. 포개 어 쌓아 올릴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는 청소, 관리, 저장하기에 용이하며 어류를 잘 관리하기에 필수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임. 자루는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고 어류에 압력을 가하기에 이용을 막아야 함.
- O (교통) 어류는 양륙지에서 시장까지 트럭이나 기타 개방된 운송 수단, 자전거로 운송되 거나 사람이 머리에 이고 옮김. 운송 수단이 항상 청결하지는 못함. 날씨가 좋지 못하면 운전하기가 매우 어려움. 청결하고 쌓아 올릴 수 있는 상자에 얼음과 함께 운송되어 어 류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모잠비크의 포장도로에서 절연 처리가 된 트럭으로 어 류를 운송하는 것은 괜찮은 편임.
- O (가공) EU의 위생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모잠비크 가공산업은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EU로 수출을 위해 승인된 가공공장은 2002년 5개에서 2006년 16개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9개로 감소하였음.
- O 주요 가공품목은 새우로 대부분은 냉동시설이 구비된 어선에서 냉동되어 포장되고 냉동고가 설비되지 않은 어선에서 조업된 연안 새우는 육지의 공장에서 분류, 포장, 냉동되며 일부 공장은 껍질 제거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 O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가공공장은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함.
- O (수출) 가공 수산 수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적절히 규제되고 있음. 수산물 점검 및 품질 보증을 위한 규정이 3월 17일 10/98번 법령에 포함되어 있음. 6월 12일 법령 17/2001은 수산물의 관리, 가공,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위생, 보건, 관리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요구에 맞춰 품질을 보장하고 있음.
- EU는 국립수산조사원(INIP)을 관할 당국으로 지정하였음. INIP은 제품의 모든 단계(선박, 양륙지, 가공공장)를 조사함. 공장은 주기적으로 조사되며 문제가 감지되면 더욱 자주 조사됨. 준수하지 못한 공장은 준수하기 위한 시간이 주어짐. 준수하지 않으면 INIP이 수출 선적에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며, 심각하게 준수율이 떨어지는 공장은 폐쇄하게 됨.
- O (국내시장) 현지 판매나 수출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는 마른 생선으로 건조됨. 국내 어류 건조 시설 수나 생산 능력은 알려지지 않았음. 몇몇 시설은 어류가 염장되는 공간을 고 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방된 공간에서 햇볕에 어류를 건조시키고 있음. 국내 가공업자 제품은 현지 소비자들, 특히 지방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며, 안전이나 품질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음. 국내 가공은 수출 가공과 같은 법률로 규제됨.

2. 대외 교역

- O 수산물 교역은 모잠비크는 수출, 수입 모두에서 상당한 수준을 차지함. 수산물 수출금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51백만 유로에서 2011년 56.6백만 유로, 2012년 47백만 유로, 수출량은 2009년 11,200톤, 2011년 13,100톤, 2013년 12,400톤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수산물 수출 중 갑각류 비중은 연안 새우 어획량 감소에 따라 2009년 84%, 2011년 74%, 2012년 69%로 감소하였음.
- EU는 모잠비크의 주요 수산물 수출국이며 냉동새우(90% 차지)가 90%를 차지하며 그 외 수출품은 대부분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임. 2012년 모잠비크 해역의 트롤어선들의 저조한 새우어획으로 2011년 5,862톤에서 2012년 2,482톤으로 사이에 EU의 수입량이 반으로 감소함.

<표 2-9> 모잠비크의 대 EU 수산물 수출량 및 수출금액

(단위: kEUR, tonnes)

구분	HS 4	품명	2009	2010	2011	2012
1 2	of CN		2000	2010	2011	2012
수출금액	0301	Live fish	0	0	0	0
	0302	Fish, fresh or chilled	339	349	172	124
	0303	Frozen fish	161	210	681	1,723
	0304	Fish fillets	0	0	87	169
	0305	Dried, smoked or salted fish	0	0	0	0
	0306	Crustaceans	35,503	43,126	43,191	19,596
	0307	Molluscs	98	28	284	774
	0308	Aquatic invertebrates, smoked of salted	0	0	0	0
	1406	Prepared or preserved fish	0	0	0	0
	1605	Prepared of preserved aquatic invertebrates	0	0	0	0
		총 수출금액	36,101	43,713	44,415	22,386
	0301	Live fish	0	0	0	0
	0302	Fish, fresh or chilled	19	95	42	30
	0303	Frozen fish	75	106	248	530
수출량	0304	Fish fillets	0	0	4	19
	0305	Dried, smoked or salted fish	0	0	0	0
	0306	Crustaceans	5,620	6,707	5,682	2,482
	0307	Molluscs	27	9	64	177
	0308	Aquatic invertebrates, smoked of salted	0	0	0	0
	1406	Prepared or preserved fish	0	0	0	0
	1605	Prepared of preserved aquatic invertebrates	0	0	0	0
		총 수출량	5,800	6,916	6,220	3,237

- O 모잠비크의 수산물 수입은 국내 경제 발전에 따라 2007년 19백만 유로, 14,500톤에서 2012년 32백만 유로, 44,500톤으로 증가, 내수소비의 15-20%를 차지하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입품의 99%는 전갱이와 같은 소형 원양어류로 냉동상태로 수입됨. 나미비아와 남아프리카가 주요 수입국가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현지에서 어획된 선어보다 저렴하고 질이 좋은 수입 어류(주로 냉동)를 구입함. 어류는 중량별로 판매되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됨. 일반적으로 대형 어류가 소형 어류보다 가격이 높음. 소비자들이 1년 내내 어류를 소비하므로 가격은 수요가 아닌 공급 변동에 따라 변함. 그러나 소비자 구매는 가격 외에도 기타 요인에 따라변동함. 아래의 표를 보면 4인 가구의 한 끼 식사에 닭고기 1,100g이나 소고기 1,500g, 선어 615g 또는 수입 냉동 어류 1,000g가 필요하며 가격이 고려된다면 주요 식품의 상대 가격(수입 냉동 어류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은 닭고기 259, 선어 571, 소고기 587임.

<표 2-10> 4인 가구 기준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어류 및 육류의 상대 가격

제품	구매 중량(kg)	구매 가격(MT/kg)	가격(톤)	비가중 평균	상대가격
Horse mackerel	1.0	42~50	42~50	46	100
Vermillion snapper	1.5~2.0	150	225~300	263	571
브라질산 냉동 수입 닭고기	1.1	95~120	105~132	119	259
소고기	1.5	180	270	270	587

자료 : USAID

- O (품질) 모잠비크 모든 어류가 우수한 수준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님. 선상이나 양륙, 처리, 운송 또는 시장에서의 열악한 처리 및 저장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있음.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는 처리, 운송, 판매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얼음과 보호 및 청결의 부족임. 또한 일부 항구나 양륙지 등 처리 현장이 위생적이지 않음. 마푸토 및 베이라 시장은 상태가 매우 열악하며, 일부 어류들은 땅 바닥에서 얼음이 없거나 비바람, 파리, 새, 동물들로부터 보호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됨.
- O (냉동실)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 부문 대표자들도 얼음이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 대부분의 얼음 판매자들은 자신들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에만 얼음을 판매하며, 국

제 가격 US\$15~25/톤에 비해 매우 비싼 US\$ 93~185/톤에 판매함. 정부 대표(IDPPE)는 대다수 지역에서 전기가 부족해 얼음이 부족하며, 영세 어업의 얼음 사용은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O (판매 방식) 선주는 양륙지에서 개인 구매자들에게 어획물을 판매하며, 개인 구매자는 대부분 시장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상자와 얼음을 제공하는 중개인. 시장에서 어류는 소비자나 유통을 위한 도매업자에게 판매됨. 대부분의 어류는 선어 상태로 판매 및 소비되며 현지 시장에는 냉동 어류를 판매하기도 함.

제4절 어획 후 이용

1. 어류 가공

- O 훈제, 냉동, 건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획물을 가공함. 산업 어업에서 어획된 새우는 수출을 위해 선상에서 냉동되며, 영세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아프리카 수출 및 국내 소비를 위해 주로 건조 처리된다. 해안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어업권을 소유할 때 가능함. 정어리 통조림 가공 및 염장/건조 공장 1개소가 마푸토에서 가동 중임.
- O 건조 및 염장 건조는 어류 보존을 위한 주요 가공법이며, 염장 건조는 오징어, 모든 크기의 어류뿐만 아니라 2급의 어류에도 이용됨. 염장 건조나 건조는 모잠비크 북부 및 중앙지역에서 이루어지며, 북부에서 냉동, 남부에서 훈제됨. 저장 설비가 부족하여 훈제나 건조 등 전통적 가공법이 많이 쓰이고 있음.
- O 모잠비크의 대표적 양식업체인 Aquapesca는 새우 및 틸라피아 양식, 조개 가공 등을 영 위하고 있음.
 - Aquapesca의 생산품 중 새우와 굴은 유럽으로 수출되고 조개는 일본으로 틸라피아는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 2010년에 약 200톤의 새우를 EU로 수출하였고 2013년에는 조개 약 25톤을 일본에 수출하였음.
- 2015년에는 Nacala, Nampula 주 항구에 소재한 연구소에 조개 가공라인을 추가로 도입하였음.

2. 어시장

- O 수산물 시장은 상업적 가치나 품질에 의지하고 있음. 모잠비크에서 주요 수출품은 고품 질 새우나 gamba, lobster이며 2급 제품은 현지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량은 수 출되기도 함.
- O (국내시장) 모잠비크 연안에 따라 크기가 다양함. 영세한 양륙지가 700개 이상 존재하고 동 양륙지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며, 건조, 훈제, 염장 형태로 가공되기도 함.
- 어류(특히 선어)에 대한 유통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영세 어민들이 잡은 어류는 대부분 생계 목적으로 양륙지 내부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새우를 제외하면 영세 어획물이 수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어민들이 양륙지의 어류를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도매상은 대부분 현지 어시장으로 가져갈 소량만 선어로 구매함.
- 일부 도매상은 선어를 구매하여 가공(건조, 염장, 훈제) 후 자전거나 픽업트럭에 자루로 담아 마을이나 대도시의 현지 어시장으로 운송함.
- 현지 어시장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많으면 가격은 보통 하락함. 판매자와 구매자는 항상 가격을 흥정할 수 있음. 보통 우기에는 사람들이 어류보다는 채소를 선호하여 모잠비크 어류 거래가 침체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자를 막기 위해 주로 전갱이를 수입하고 있음. 국내 시장 유통을 위해 연간 25,000~30,000톤이 지역 시장에 서 수입됨.
- O (국제무역) 모잠비크 수산물에 대한 국제 시장은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남아 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아시아(홍콩, 일본), 유럽(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광범위함.
- 수출을 위한 어획물은 산업용 및 준 산업용 선단에서 어획되며, 선상에서 냉동되거나 선어로 양륙 또는 육지의 가공 공장에서 냉동 및 가공됨. 어획물 대부분은 냉동 컨테이 너를 통해 유럽 및 기타 목적국으로 수출됨.
- 신임장을 받지 못한 소형의 많은 가공 공장들은 추가가공이 이루어지는 남아공으로 제품을 운송함.
- 아프리카 내 주요 수출 시장은 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와 남부아프리카관세동 맹(SACU) 소속 국가로 SADC과 SACU 시장은 모잠비크 어류 총 수출에서 약 40%를 차지함. 준 산업 어업의 담수 소형 원양어종(Kapenta)은 짐바브웨로 대량 수출됨.

- 전통/영세 가공 어류(염장 건조, 훈제)는 비공식적으로 인접 국가(탄자니아, 말라위, 짐 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로 수출됨. 탄자니아로의 어류 수출은 Cambo Delgado 지방에서 이뤄지며, 말라위로의 수출은 Nampula, Zambezia, Beira 지방에서, 잠비아로 의 수출은 Tete(Cahora Bassa Dam) 지방에서 이루어짐. 제품 대부분은 건조 및 훈제 형태로 거래되나, 남아공은 냉동 새우 및 어류를 수입함.
- 비아프리카 국제교역은 모잠비크 어류 수출량 기준으로 약 62%를 차지하는 EU와 아시아(12%)로 이루어짐. 고급새우가 주요 수출품으로 EU(주로 스페인)로 수출되고 있음. 심해 새우는 이탈리아 및 남아공으로 수출됨.

제5절 수산업 기관 및 법률 체계

1. 수산업 기관

- O 모잠비크 수산부는 2000년 1월 17일 대통령령 1/2000에 따라 설립되었음. 수산부에는 수산행정, 수산경제, 인적자원을 위한 3개 부서가 있고, 수산검사, 양식, 국제협력, 기금 행정을 위한 4개 중앙 부처가 있음.
- O 수산부 및 수산검사부(2005년 법령 18/2005에 따라 설립) 소속으로 연구소(1987년 설립), 소규모어업개발원(1989년 설립), 수산계 학교(1980년 설립), 수산발전기금(1988년 설립)이 있음.
- O IDPPE(어업 순회교육 제공), IIP(생물, 행동, 잠재 자원 연구 수행), FFP(투자 정보 서비스 제공), ADMAR과 SPAP(라이센싱 및 감독)는 영세 어업을 다루는 주요 기관임.
- O 국립수산 행정 및 연구 기관에 대한 내부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DNP(국립수산부): Lima@Pescas.uem.mz
- IIP(수산연구소): Mazibe@Magumba.uem.mz
- IDPPE(소규모어업개발원): Bomba@Idppe.uem.mz

2. 법률 체계

- O 모잠비크 수산법의 기본은 1990년 11월 26일 수산법 및 부속 규정을 따르며, TAC/쿼터와 금어기, 그물코 규제 등 입어 제한 규정(라이센싱/노력 할당)을 기반으로 한 수산 관리 체제임. 다른 방식과 다르게 본 관리법은 가치가 큰 자원에 대한 평가 결과나 선단의경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그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정됨.
- O 1990년 관리 의사 결정 시 민간 부문과 어업 공동체 간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수산행정 위원회(CAP)가 설립되었음. 수산행정기관과 수산 업계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장관에 대한 자문 기구이며, 연구 부문에서 발표된 쿼터나 선박 할당, 금어기 규모 및 기간, 주요 자원의 이용 현황, 추천된 관리 방법을 논의 및 분석함. 수산당국은 수산행정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지역 및 국제적 사안도 국가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됨.

Ο 법 목적

- 민간 및 공공 투자 진흥
- 생산성 향상
- 유망한 양식업 활용
-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 형성
- 책임감 있고 투명한 관리

ㅇ 주요법령

- 신 수산법 (양식업 포함)
- 2013-2017 양식업 개발을 위한 전략계획
- 양식업 투자를 위한 국가계획
- 2008-2017 양식 개발을 위한 전략
- 영세 어업 개발을 위한 전략계획
- 기후 변화 전략(주류 사안)
- 수산 정책 (MCS 정책 및 전략 포함)
- 수산 종합 계획 (2010-2019)
- IUU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
- 참치 어업 개발을 위한 전략계획

ㅇ 수산업 관리

- 적절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지난 몇 년간 과학적 발전과 함께 MCS 제도 등 관리도구도 개선 및 시행되었음. 특히 MCS에서는 SADC, IOTC, SWIOFC 등과 지역적 협력이 강화되었음
- 생물학 및 환경적 샘플링(선상 및 지상)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 항해일지, 생물학적 샘플 링, 항해 조사 등의 자원평가 관리 제도를 구축해 왔으나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많은 작업이 남아 있음.
- (실례) 투입량 관리, 라이센스, 선박 종류, 어획 조건, 노력량 제한, 선박 수, 어구 종류 및 개수, 총허용어획량(TACs), 쿼터, 선박감시시스템(VMS), 어획 구역, 조업 중 선박 위치, 어획량, 항해일지, 신고서, 전자 항해일지(다랑어), 샘플링 및 통계 시스템(영세), 원격감시, 생산량 관리, 어획 증명서 등

제6절 주요 수산업 관리제도

1. 주요 목적

- O (주요 목적 및 활동 개요) 모잠비크 수산 정책은 수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전망 제시, 식량 안보에 대한 주요 목적 달성, 외화 획득 증가, 실업률을 감소, 빈곤 완화가 주요 목 적임. 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 및 국가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수산 업계는 2007년 4월 4일 대통령령 6/2000으로 승인되어 아래 요약된 수산정책에 집중해야 함.
- 해양 자원의 책임 있는 수산업 관리, 어류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특히 어류 자원의 보호와 보존, 역동적인 공동 관리 방법 마련
- 국내 소비 및 지출을 위한 모잠비크 수역 내 어업 활동 및 관련 조업 개발
- 어업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업 제도적 역량 향상
- O 수산업 관리를 위한 정부 전략에는 수산업을 이용하여 자국의 경제수익을 최대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보존도 포함되어 있음. 상기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음.
- 기본적으로 쿼터 할당에서 생산 부문 참여를 독려할 것
- Sofala Bank의 산업용 새우 어획 능력을 감소시킬 것

- 변화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주기 위해 주요 수산업 자원 감독을 위한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 산업 및 준 산업용 수산업을 위한 생물 경제학적 모델 적용을 독려할 것
- 해양 감독을 허용하기 위해 수산업 감시 시스템을 개선할 것
- O 모잠비크는 어업지역 및 인근해역에서 사용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 다랑어 어업 발전을 목적으로 어업개발계획(2010-2019)을 수립하고 2013년 채택된 다랑어 어업개발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움.
- 전략계획 중 하나로는 다랑어어선의 신조가 있음. IOTC 보존관리조치 09/02에 따라 모 잠비크는 2013년 3월 선박개발계획(2014-2028)을 IOTC에 제출하였음. 해당 계획에는 모잠비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선을 모잠비크 헌장, 국적으로 변경을 포함하며 변경 의 대상은 어선 130척으로 이는 2005-2010년 동안 허가받은 평균 외국선 수와 상응함.
- Ematum 프로젝트를 통해 모잠비크는 200백만 유로에 달하는 순찰선 6척, 조업선 24척 (연승선 21척, 트롤선 3척) 신조를 프랑스에 발주하였음. 연승선, 트롤선 모두 23.5m로 같은 선체 모델에 8명의 선원이 탑승하며 10일간 항해 가능함.
- 선체 길이로 비교하면 황새치를 조업하는 Reunion 연승선의 모델과 유사함. Reunion은 130톤 조업 가능하며 연간 어획량은 2,500~3,000톤임.

2. 조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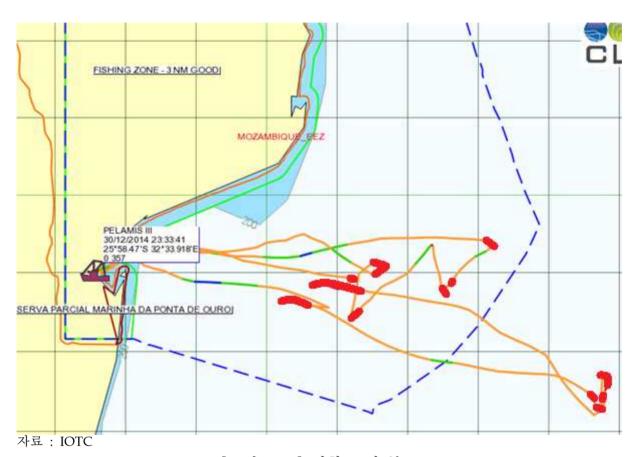
- O (공동관리 활동 및 참여 접근법) 모잠비크 정부는 자원 보존을 위해 지방어업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영세 어업 공동체는 정부 기관과 협조 및 공동 관리를 위해 어민 협회를 설립하였음. 또한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이용 및 이해당사자간 갈등 완화, 공동 관리 계획 실행 및 전파를 위해 영세 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주요 활동은 법률 집행 및 민감한 연안 자원에 대한 어획량 조절이며 영세공동체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설립된 영세 어업 협회나 공동 관리 위원회 활동의 공식화에 관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절차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을 위한 지방의 관리 노하우 전파를 위해 연안 공동체와 협조하여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정	관
협의회	차관
공동조직 협의회	사무차관
기술 협의회	장관실
수산연구소(IIP)	감사관
소규모어업개발원	국가 수산경제부
수산계 학교	국가 수산행정부
수산개발기금(FFP)	인적자원부
국립수산감독원(INIP)	양식산업부
지방 수산부(DPP)	행정재정부

- O (관리 방법) 모잠비크 수산업 관리 제도는 어획 노력 제한과 어획량 제한으로 구분됨. 정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따라 해양 및 내수면 수역에 조업 활동을 축소 및 제한하고 있음.
- 환경을 보존할 경우
- 수산 자원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 단체의 경제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 O 수산 쿼터 제도는 각 수산업의 총 허용 어획량(TAC)에 기반을 둠. 정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제적 조업자들과 협의한 후 생물학적 증거 및 경제적 이유에 따라 어업 규제 방법을 수립함. 우선순위로 판단되는 지역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자 정부는 가능한 장려책을 제안함. 우선순위는 다음의 활동에 할당됨.
- Cabo Delgado, Napula, Zambezia 지방의 영세 어업 및 영세 선박 조선
- 영세 수산자원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얼음 생산 및 냉장 저장 네 트워크
- 영세 선단 및 영세 어획물 마케팅에 대한 지원
- 활용되지 않은 자원이나 새로운 어장에 대한 산업용 어업
- 준 산업용 어선단 재개발 및 확장
- 어류 가공 시설
- 해양 새우 양식업

제7절 기타 수산업 통계

O 아래는 산업용 연승 어선의 항적으로 굵은 선은 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위치를 의미함.



[그림 2-2] 어획 노력 분포

- O 모잠비크 수산부는 MCS(모니터링, 통제, 감시)를 목적으로 2001년 VMS 시스템 도입을 도입하였으며 2010년 현 시스템이 개발되어 2011년부터 운영, 이를 통해 국가 수산업과 다랑어 선단(국적 및 외국적 선단)을 관리하고 있음.
- O 국적 다랑어 선단 어업에 대해서는 수산부가 2012년부터 VMS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음.
- O 다랑어와 유사 어종 및 기타 IOTC 주요 부수어획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선단은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며, 지인망이나 갈고리, 자망, 영세 선망, 영세 또는 산업용,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어업용 연승 등이 있음.

제8절 모잠비크 수산법

1. 어업

- O (허가발급) 외국인에 대한 어업 허가는 영해를 벗어난 범위에서부터 부여되고, 갱신기간은 1년 이하임.
- O 어업 허가 및 갱신을 위해서는 어업권이나 협정 및 계약, 수산법 22조에 따른 등록, 위생 허가, 모잠비크해양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어업권이 없거나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 자가 심각한 상습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어구가 수산법에 맞지 않을 경우, IUU 어선, 수산부의 허가 범위 내에 없는 경우 등에는 어업허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 O (어구) 어업활동에서는 폭발성 물질의 사용 혹은 독성물질이나 전기 감전을 이용한 어구, 어류를 자극하거나 멸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구, 어획하기 매우 쉬운 어구들은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2. 양식업

- O (질병관리) 양식업 허가를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은 양식 환경 및 생태계, 공중 보건, 수생 종을 위태롭게 하는 질병의 검출 및 발생을 감시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함.
- 감염된 어종들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배출은 금지됨.
- O (폐수) 화학제품 및 의약품, 병원균, 오염된 시료, 유기물, 침전물이 들어있는 양식설비 폐수는 적절한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관리되어야 함.
- 〇 (맹그로브) 양식설비 설치를 위한 맹그로브의 파괴는 금지.
- O (허가 발급) 양식업 설비의 건설 및 이용은 사업소개, 사전 허가, 면허발급, 수수료 지불절차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후에 가능함.

3. 어업 위반행위

- O (어업 중범죄)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매우 심각한 어업 위반행위로 간주됨.
- 모잠비크 수역 내에서 국내 또는 외국 어선의 무허가 어업 활동
- 공해 또는 제3국의 수역에서 무허가 어업 활동
- 어업 허가의 위조
- 단속요원으로부터 어선 탈취 시도 또는 도주
- 동법 제50조에서 언급된 물질 혹은 제품의 소유 또는 운송
- 허가와 관련 없는 다른 어업 및 관련 활동
- 거북 배제장치(TED)의 무사용 또는 부정사용
- 선장이 단속요원의 입출항 또는 어구 철수, 서류 제시 명령에 거부 행사
- O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심각한 어업 위반행위로 간주됨.
- 선박의 사양이 맞지 않거나, 허가 없는 어구 소지 또는 사용
- 어업활동 중 허용된 그물망 크기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하거나 잠수어업에 무기사용 또 는 금지된 어구 사용
- 그물 크기를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사용
- 금어기에 어업 활동
- 어업금지 구역이나 허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의 어업 활동
- 포획 금지 종의 어획
- 허용된 무게와 크기 이하의 어종 어획
- 허용된 어획량 이상 활동하거나 제한된 활동 기간을 초과하여 활동
- 허가 정보 불법 수정
- 어획량 및 조업 활동기간, 통계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 설치 및 사용된 설비에 대한 정보 위조 또는 누락
- 통신설비 또는 인공위성 위치추적 장치 개조
- 동법 제50조에 명시된 물품 소지, 사용 또는 수송
- 허용되지 않은 수산물 또는 허용되지 않은 부두에 수산물 하역 또는 환적

- 보존 및 공해 관리에 대한 국제 조치 불이행
- 어선의 등록이나 정체를 허위 표시하거나 은폐
- O (어업 경범죄)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어업 단순 위반행위로 간주됨.
- 어업허가 취득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
- 관계당국에 등록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
- 감사관 또는 연구 기술사와의 협력 부족
- 선박 및 장치에 관한 일지 기록의 누락 혹은 손실
- 선박에 어업허가 사본 혹은 기타 법적 의무 서류 누락
- 인공 호흡장치 허가 없이 잠수조업 시행
- 관계당국에 사전신고 없이 어업관련 스포츠 대회를 열거나 금지된 대회 시행
- 생산자가 금어기 혹은 금지된 구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거래 혹은 그 물품을 상인이 거래
- 선박의 위치관련 정보 수집 시 거절
- 기한 밖의 통계자료 공급

4. 양식업 위반행위

- O (양식업 중범죄)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심각한 양식업 위반행위로 간주됨.
- 사전승인 없이 양식설비 건축
- 사전승인 없이 종 수입
- 양식설비의 외래종에 대한 검역규정 미준수
- 무허가 설비 가동
- 사전승인 없이 유전자 조작 활동
- 적합한 설비 없이 폐수 방출
- 무허가 화학약품, 의약품 사용
- 양식업 허가에 따른 설립조건을 변경 혹은 위조
- 사전허가 없이 야생종 양식

- 질병 발생 미통지
- 화학물질 혹은 동물용 백신의 한계치 미준수
- O (양식업 경범죄)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양식업 단순 위반행위로 간주됨.
- 허용 범위에 도달
- 승인된 프로젝트에 없는 설비나 작업
- 양식설비에 대한 공인기관의 접근 거부
- 맹그로브 지역을 양식설비를 위해 사용, 교체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설비 해체
- 화학물질이 포함된 물, 병원균, 유기물질, 침전물, 감염된 표본, 병든 표본 등을 방출

제9절 모잠비크 ODA 현황

- O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잠비크 해양수산 분야에 총 51개의 원조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약 7,440만 달러가 투입되었음.
- O 모잠비크 해양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특징은 소규모 어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이는 모잠비크 소규모 어업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한 현상임.
- O 일본은 Maputo, Beira, Quelimane 지역의 어항 및 수산시장 재건 프로젝트 등 내전으로 파괴된 어항 및 수산시장 인프라 복구에 많은 지원을 함.
- O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로부터의 통합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1> 對모잠비크 해양수산분야 양자협력 주요 프로젝트(2008~2012)

(단위 : 달러)

연도	공여국	주요 사업 내용	금액	코드
	스페인	수산물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309,475	31391
	아이슬란드	지속가능한 양식 개발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개발	599,685	31310
2008	이탈리아	판매 서비스 지원	21,637	31305
2006	태국	소규모 어업 지원	8,784	31320
	스페인	Niassa 지역 개발 지원	80,129	31320
	노르웨이	시민사회 역량개발	39,649	31320

연도	공여국	주요 사업 내용	급액	코드
	이탈리아	수산업과 수공업의 통합 발전	1,332,018	31320
	스페인	어획과 양식 분야 파트너십 세미나	49,717	31310
	미국 연구 및 기술 전파		1,429,253	31382 31310
	스페인	지방 양식 개발	205,965	31320
	이탈리아	소규모 어업과 공급 체인에서의 마케팅 다양화	1,014,791	31320
	노르웨이	수산분야 부가가치	10,769	31310
	일본	기술협력(TC Aggregated Activities)	817,135	31320 31310
	노르웨이	Fisheries Appraisal Mission(트롬소 대학)	21,607	31310
	칠레	해양 역량 훈련	634	31310
2009	노르웨이	수산분야 지원	30,251,160	31310
	브라질	소규모 어업 및 가족 양식 현황 파악 및 커뮤니티 개발 관련 전망	34,061	31320
	프랑스	양식 개발 관련	2,136,082	31320
	칠레 자원 평가 및 관련 지표 개발		10,993	31320
	아일랜드 NGO 프로젝트 공동투자		207,880	31320
	노르웨이	Fisheries Appraisal Mission - local travel	1,039	31310
	노르웨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리 훈련	5,689	31310
	일본	기술협력(TC Aggregated Activities)	169,983	31310
	캐나다	Memorial 대학 내 해양연구소 해외인턴십	64,826	31310 31382
2010	스페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752,522	31381
	벨기에	양식관련 시범 프로젝트	70,933	31381
	스페인	PEMBA 지역의 소규모 어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25,457	31381
	이탈리아	Beira 지역의 수산업 가공 및 어업 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지원	11,265	31381
	포르투갈	모잠비크 소규모 어업의 다양화	8,343	31320
	아이슬란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62,250	31382
	아일랜드	수산분야 활동 NGO 자금 지원	163,287	31320
2011	아이슬란드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수산 분야 역할 강화	1,584,958	31320
2011	스페인	양식관련 연구 지원	16,263	31320
	일본	기술협력(TC Aggregated Activities)	782,397	31310
	스페인	수산물 품질 향상 계획	17,097	31381
	덴마크	소규모 어업 지원	37,311	31320
	노르웨이	시장 개혁 이니셔티브	79,167	31320
2012	일본	수산관련 시설 재건 프로젝트	433,949	31320
	노르웨이	수산분야 지원	6,388,684	31310

연도	공여국	주요 사업 내용	금액	코드
	벨기에	양식관련 시범 프로젝트	1,760	31381
	일본	Maputo 시장 건설 프로젝트	11,619,913	31391
	노르웨이	모잠비크 수산분야 검토 프로그램	31,080	31310
	아이슬란드	식량안보 개선, 수산 커뮤니티 주거환경 개선 등	1,706,201	31310
	덴마크	수산 개발 관련	146,344	31320
	스페인	수산기술 교육훈련 사업	56,839	31381

자료 : AidData.org

- O 다자협력 역시 소규모 어업 중심의 프로젝트가 많은데, 주로 소규모 어업과 관련된 인프라 복구, 데이터 구축 사업, 커뮤니티 중심의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음.
- O EU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잠비크와 어업협정을 맺어 매년 98만 유로를 지불하고, 이중 46만 유로는 수산정책개발금으로 활용하였음.

<표 2-12> 對모잠비크 해양수산분야 다자협력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실시연도	공여자	주요 내용
Nampula 소규모 어업 프로젝트	1995~ 2002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OPEC(석유수출국기구)	커뮤니티 개발, 수산업 개발, 시장 및 접근성 향상, 금융 서비스 및 거버넌스 지원
수산 정보 시스템	1999~ 2005	DFID(영국개발협력처),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지역 통계자료 공유
Sofala, Inhambane, Gaza, Nampula, Tete 지역의 소규모 어업 역량 재건 사업	2000~ 2002	이탈리아 개발협력처, FAO	어업 역량 재복원 보조
Sofala Bank 소규모 어업 프로젝트(PPABAS)	2002~ 2011	IFAD, NORAD, BSF*, CNCS	커뮤니티 개발, 수산업 개발, 시장 및 접근성 향상, 금융서비스 지원
북부 Nampula, Cabo Delgado 지역의 소규모 어업 프로젝트(PPNCD)	2003~ 2009	AIDB	융자 제공, 커뮤니티의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개발
Beira 어항 재건 사업	2004~ 2009	BADEA, BID	소규모 부두 재건, 기타 인프라 건설
조업 감시 (SADC MCS 프로그램)	2001~ 2006	EC	검사관, 해상경비, 항공정찰대 훈련

주 : 벨기에생존기금(BSF)은 1983년에 벨기에 정부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가뭄과 기근 해결을 위해 조성한 자금으로, 이 후 2010년 Belgian Fund for Food Security(BFFS)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식량안보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지원

자료 : NEPAD 2011

- O 모잠비크 수산업의 SWOT 분석에 따르면 모잠비크는 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원조를 받아 오면서 비교적 수산업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음.
- O 또한 모잠비크 정부가 수산 분야 개발의지가 높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며, 아직 어종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양식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는 점도 기회로 작용함.
- O 그러나 일부 수출 중심의 고부가 가치 어종(새우, 랍스터 등)을 중심으로 자원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불법 어획 행위를 감시.감독할 역량이 전무함.
- O 이에 따라 모잠비크에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안정적인 수출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위주의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함.

STRENGTH	WEAKNESS
 수산 전문 부처가 있음 2010년 수산 분야 마스터 플랜 수립 수산 분야 법체계 마련, 외국 투자에 우호적 연안 지역에 공동관리 위원회 수립 소규모 어업 관련 제도 및 전담 직원 선박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존재 	 통계 자료 미비, 제도의 취약성 모잠비크 자립적인 관리, 감시, 감독 역량 없음 자연적으로 수산 관련 정보 부족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소규모 어업에서 IUU 어업 만연 고부가 가치 어종은 남획 상태
OPPORTUNITY	THREAT
아직 남획되지 않은 어종(다랑어류) NGO와의 협력 활성화 수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전기, 통신 상태 양호 수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음 양식 잠재력이 높음	ODA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음 수산개발과 해양보존 충돌 환경 오렴 현지 개발 파트너 부족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 소규모 어업 역량 강화
- 수산 인프라 재건
- IUU 어업에 대한 인식 제고
- MCS 시스템

 \Rightarrow

• 자원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

자료 : NEPAD 2011

[그림 2-3] 對모잠비크 SWOT 분석을 통한 ODA 협력 수요

Chapter

3

모잠비크 투자가이드

제3장 모잠비크 투자가이드5

제1절 투자환경

1. 투자환경

- O 동부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
- 모잠비크 국토는 동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등 내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아시아로부터의 상품 수입 시 내륙운송 거점 기능.
- O 인프라 및 빌딩 건설경기 호황으로 향후 10년간 지속 성장을 전망.
-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재건과 사무건물 및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 대 이후 건설 붐 지속됨. 도로 및 교량 건설, 건축, 철도 재건, 엔지니어링, 재건축 등이 주요 분야임.
- 모잠비크 북부 주요 가스 개발 지역인 로부마만 1광구와 4광구 운영기업 ENI와 아나다 르코 외 일본 미츠이(Mitsui),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 중국 CNPC, 인도 ONGC, 태국 PTTEP, 한국 가스공사 등 아시아 에너지 기업이 대거 참여 총투자규모는 1천억 달러로 예상되며, '20년 생산개시 후 모잠비크 GDP에서 액화천연가스의 비중은 2023년 30%, 수출은 50%를 차지할 전망임.
- O 석탄,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등 풍부한 광물 보유.
- 기개발이 진행 중인 천연가스와 석탄 외에도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보크사이트, 탄탈라이트, 에메랄드, 금, 루비, 석회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 지질 정보 부족, 관련법령 미비, 정부기관 역량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미개발 상태의 광물자원이 많아외국 자본들의 관심이 높음.
-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2015-2019)을 추진 중임.
- 정치적 혼란과 도농간 빈부 및 개발 격차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

⁵⁾ 본 장의 1, 3절은 「2016 모잠비크 진출전략(Kotra, 2015)」과 2016년 국제수산포럼 전문가 원탁회의 발표자료「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모잠비크 수산연구소, Nilza Dias 연구위원)」를 토대로 재구성함

- 고용창출, 생산성 증대,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민주주의 확대 등 경제 및 사회 전반 에 걸친 정부주도의 개발 계획임.
- (1) 국민통합 및 평화증진, (2) 인적자원 및 사회 개발, (3) 고용·생산성·경쟁력 강화, (4) 경제 및 사회 간접자본 개발, (5)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자원 및 환경 개발 등 5개의 과제로 구성.

O 외국인투자 유치 통한 산업 개발

- 사회간접자본, 천연자원과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실업 해결, 인 프라 확충,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과 생산성 증진을 추진함.
- 중점 육성 산업은 식품, 목재가구, 건설자재 및 장비, 산업폐기물처리, 기계공업/금속가 공, 화학, 에너지/광업 등임.
- O (한국과의 경제교류) 원조 중심의 일방향성 경제 교류
- (유상원조)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EDCF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15년 5월 기준 총 12개의 프로젝트를 승인.
- (무상원조) 공무원 초청연수,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원조사업 전개 '15년에는 산 업학교 역량강화, 지도제작, 무역진흥 역량강화 자문관 파견, 빈곤퇴치 지원 등 8개 사업에 걸쳐 34억원을 지원.

2. 한·모잠비크 교역현황

- O 현지화 가치하락, 건설 기자재 수입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
- 남아공, 중국, 인도, 포르투갈, 네덜란드, UAE, 미국, 싱가포르 등이 주요 교역국임.
- 석탄, 알루미늄 등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등 공산품을 수입.

<표 3-1> 모잠비크 수입동향

(단위:백만 달러)

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	3,512	5,368	7,903	8,480	8,667	8,709	9,655

자료: EIU ('15-'16년은 추정치), FOB기준. (재인용: 2016 모잠비크 진출전략, Kotra, 2015.)

O 한-모잠비크 무역규모는 '14년 기준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양국간 무역규모는 '93년 수교 이래 약 20배 성장함.

- '13년 對모잠비크 수출 급증 후 '14년에 최초로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수입은 지속 증가 세를 기록하다 '13년에 급감한 뒤 '14년에 다시 회복세를 보임.
- 한국의 對모잠비크 주요 수출 품목은 세제, 철강구조물, 승용차, 합성수지, 케이블 등이 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 잎담배, 고동, 바나나, 고알루미늄 등이 있음.

<표 3-2> 한·모잠비크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٨ ٠٠٠	금액	23	39	35	35	41	44	92	101
수 출	증가율	53.4	68.8	-8.3	-2.2	18.7	7.4	109.8	9.7
* 01	금액	1.8	2.4	4.5	6.3	24	66	15	29
수 입	증가율	219.4	30.4	89.3	40.3	275	179.2	-78.1	99
무역	수지	21	36.1	30.8	28.2	17	-22	77	72

자료: World Trade Atlas. (재인용:2016 모잠비크 진출전략, Kotra, 2015.)

<표 3-3> 2014년 한·모잠비크 품목별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	·출			수입	
で日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세제	12,190	21.6	석탄	26,505	330.9
2	철강구조물	9,124	522.1	잎담배	938	△73.9
3	승용차	8,174	27	고동	419	-
4	합성수지	5,894	△6.5	바나나	358	-
5	알루미늄케이블	5,265	_	고알루미늄	246	_
총계				총계		

자료: World Trade Atlas, HS Code 4단위. (재인용: 2016 모잠비크 진출전략, Kotra, 2015.)

O 비제도적 요소가 수출 진입장벽임.

- 수입 쿼터제 등의 규제제도는 없으나 비효율적 통관, 부정부패 등 불투명한 행정절차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수입품에 대하여 별도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미비한 실정임. 수입금 지품목으로 서적, 예술품, 음악CD를 포함한 모조제품, 음란물, 모잠비크에서 사용하는 우표의 모조품, 건강위해 약품과 식품, 증류주, 병원사용 외 마약 등이 있음

3. SWOT 분석

- O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경험, 제조기술, 해외진출 동기를 보유한 점이 모잠비크의 주요 강점임.
- O 넓은 국토와 해안선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지하자원, 높은 경제성장률 및 미개발 잠재력이 주된 기회로 작용함.
- O 짧은 진출 역사, 물리적 거리, 언어장벽, 낮은 금융혜택 등이 약점임.
- O 급격한 환변동, 열악한 인프라, 정치 불투명성 및 불안정성 등이 위험 요소임.

<표 3-4> 모잠비크 SWOT 분석

Strengths	Weaknesses
-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경험 - 다양한 제조기술 보유 - 해외진출 의지	- 언어장벽(포르투갈어) -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 - 일천한 모잠비크 진출역사 - 경쟁국 대비 금융지원책 열위
Opportunities	Threats
-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 - 높은 경제성장률 - 인프라 보급 미비에 따른 개발 잠재력 - 넓은 국토와 해안	-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불투명성 - 교통 및 사회 인프라 열악 - 급격한 환변동 - 반군활동으로 정치적 불안성 상존

자료: 2016 모잠비크 진출전략, Kotra, 2015.

4. 투자 진출 전략

- O 모잠비크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산업개발 등의 분야에서 현지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진출이 필요함.
- 모잠비크는 최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 변모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앞두고 있는 바, 우리기업이 조기진출 한다면 고도성장의 과실을 장기간 향유할 수 있음.
- 현지 산업의 개발수준이 낮아 유력한 현지기업이 부재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이 비교적 용이함. 진출 초기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등의 진출방식을 활용하고, 신뢰성이 높은 현지기업과 협력사업 추진이 바람직함.

- 시장의 유망성에도 불구하고 언어장벽, 물리적 거리, 열악한 인프라, 환변동 등의 사업 위험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O 투자 진출 전략은 현지정부 산업개발 정책과 부합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현지정부의 제조업 육성지원 정책 활용 필요함

제2절 투자법 및 조세제도

1. 주요 투자법 개요

- O (투자법상 외국인) 모잠비크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모잠비크 법인을 투자법 상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외국인 투자자, 고용주, 노동자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 O (투자 재산권의 보호 및 해외 송금의 보장) 승인된 투자에 대해는 산업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 상품 및 재산의 보장, 안전을 보장하며, 중대한 국익과 공공 안전 및 질서를 이유로 국유화하거나 강제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시행함.
- 정부기관의 명백한 책임으로 투자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보상평가는 권한을 가진 전문 감사법인 또는 특별 선임된 팀에 의해 90일 이내수행함.
- O (외국인 직접투자의 등록 및 권리의 양도)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인가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련 자금을 모잠비크 내로 예치하고 사업의 등록을 완료해야 함.
- 투자 지위 또는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지위 양도신청은 CPI(투자 청) 또는 MEF(경제재무부)에 제출해야 함.
- O (분쟁 해결) 투자법 및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관계 사법당국이 해결해야 하며 모잠비크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아래 규정에 의거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국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ICSID 규정
- 파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규정 등

2. 투자법 시행규정

- O (투자법 시행규정 관리주체) CPI와 GAZEDA는 관련법 등을 기초로 정부 정책 및 전략에 따라 모잠비크 경제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투자 사업을 지원 및 수행함.
- (외국인 직접투자 최소한도) 투자금 최소한도는 250만 메티칼(약 3만 5,000달러)
- O (투자 승인 신청서 제출) 투자 승인 신청서는 CPI 또는 GAZEDA에 포르투갈어 혹은 영어로 제출해야 함.
- O (승인 권한 및 기간) 승인 신청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투자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지방장관) 15억 메티칼 이하 내국인 투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CPI청장) 25억 메티칼 이하 내 외국인 투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경제재무부장관) 135억 메티칼 이하 내 외국인 투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내각) 아래 각 항의 투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 135억 초과 투자, 1만 ha 초과 토지를 필요로 하는 투자(임업 관련 투자 별도), 10만 ha 초과 토지를 필요로 임업 투자, 기타 사업특성상 검토가 필요하거나 MPD 장관이 내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GAZEDA청장) ZEE 또는 IFZ 투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CPI 또는 GAZEDA는 승인 결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승인 받지 못한 경우 투자계획서를 재작성해 다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승인된 사업은 별도 조건이 없으면 승인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 시행되어야 함.
- O (외국인직접투자의 등록)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중앙은행(Bank of Mozambique)에 등록해야 함.

회사명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 - 등기소(Legal Entitles Registrar)

주주에 의한 회사 정관 작성 - 공증사무소 등 전문인력에 의한 검토 필요

임시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예치 증명서 발급 - 지역 은행

사업자 등록증 발급, 관보에 회사 설립 공시 - 마푸토 소재 등기소

세무등록 및 세금등록번호(NUIT) 취득 - 관할세무소

운영관련 라이센스 신청
- Presidente of Conselho Municipality

세무서에 사업개시 신고 - Reparticao de Financas

사업개시 및 직원 후보자 신고
- 고용센타(provincial employment center)

사회보장시스템에 직원 등록 (social security system)

직원보상보험가입 (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원: 모잠비크 투자환경 및 제도 [그림 3-1] 모잠비크 법인설립 절차

3. 조세제도 개요

- O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국세(Imposto Nacional)와 지방세(Imposto Autarquicos)로 구분됨.
- O 국세의 경우 재산에 대한 직접세와 소비에 대한 간접세로 나누어지며, 소득세에는 법인 소득세(IRPC)와 개인소득세(IRPS), 간접소득세에는 부가가치세(IVA), 특별소비세(ICE), 관

세(Direitos Aduaneiros) 및 기타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양도세, 상금세, 국가재건세, 자동차세 등이 있음.

- O 지방세는 개인세(Imposto Pessoal Autarquico), 부동산세(Imposto Predial Autarquico), 상업활동세(Taxa por actividade economica)가 있음.
- O (법인소득세) 모잠비크 법인세의 표준 과세율은 32%이며 부당신고가산세율은 35%
- 회계연도는 매년 1~12월로, 기업은 5월, 7월, 9월에 임시 법인세를 납부하며 금액은 전 년도 과세금액의 80%
- 매출 2,500,000 MT 미만 기업의 경우 최소 과세율로 첫 번째 년도 1.5%, 이후 3%의 과세율이 적용되며, 7,500 MT 의 고정 금액 과세도 가능함.
- 모잠비크 거주 기업(모잠비크에서 사업신고를 한 기업, 본사가 모잠비크에 있는 기업, 경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모잠비크에서 내리는 기업 등)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되며, 비 거주기업은 모잠비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O (개인소득세) 모잠비크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모잠비크 국세청(Autoridade Tributaria)에 신고하며, 5월 1일까지 납부함.
- 모잠비크에서 1년 중 18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외국인)는 모잠비크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모잠비크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되며 최고세율이 32%
-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임금, 자본 소득, 부동산 및 복권 등의 기타 소득 총 5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별도의 과세 표준이 적용됨.
-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잠비크에 거주하는 모든 내국 및 외국인은 개인세금번호(NUIT: Unico Identificacao Tributaria)를 소지해야 함.

<표 3-5> 소득 금액별 소득세

연소득(mt)	연소득(\$)	세금비율(%)	공제(mt)
42,000	933	10	-
42,001~168,000	933~3,733	15	2,100
168,001~504,000	3,733~11,200	20	10,500
504,001~1,512,000	11,200~33,600	25	35,700
1,512,001~	33,600	32	141,540

자료: No.33/2007, de 31 de dezembro

- O (부가가치세) 모잠비크의 표준 부가가치세는 17%이며 수출품은 부가세 면세를 받음.
- O (관세) 관세율은 원자재 2.5%, 자본재 5%, 중간재 7.5%, 소비재 20%를 각각 적용함.
- 일반, SADC(남아공, 남아공 외 SADC 회원국), UE 관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기계류 상품을 K 등급(K classe)로 분류해 모잠비크투자청(CPI)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특별 관세를 적용함.
- O (부동산 세금) 마푸투와 마톨라 소재 부동산에 대해 주거용은 최고 0.4%, 사무용은 최고 0.7%의 지방세가 부과되고 건물 명의 양도 시 0.4%, 주식지분 양도 시 0.2%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토지사용권 명의 이전 시 통상 양수자가 2%를 부담함.

4. 기업에 대한 기타 세금

- O 임금에 대해 총 7%의 사회보장세(직원보수 기준 고용주 4% + 직원 3%)가 부과되며 금액의 상한은 없음.
- O (세무제도 및 협약 등) 세무자료의 제출지연, 세금 미납, 세무기록 공개 지연 시 3,000~2,500,000 MT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탈세는 최고 징역 8년, 과실의 경우 최고 징역 2년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음.

5. 세제혜택

- O (투자자에 대한 일반적 세제혜택) 관세표에서 K등급으로 지정된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부여함.
 - 마푸투시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투자금액의 5%, 다른 지방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 는 투자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5년간 공제함.
- O (급성장 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자원은 풍부하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제활동이 미약한 지역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잠베지 강 유역, 니아사 주, 나칼라 지역, 모잠비크섬 등 모잠비크투자청(CPI)가 인정한 지역이 해당됨(총 투자액의 20%까지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수입관세	투자공제세율	가속상각	신기술 도입	공제
일반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K등급품목)	10% (마푸투 5%)	최대 50%	공제가능 과세소득의 10%까지 공제 가능	
인프라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K등급품목)	_	_	-	소득세 80% 공제
농업수산업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K등급품목)	-	-	-	소득세의 50% (~2025)

자료: KOTRA, 자료원: Law 4/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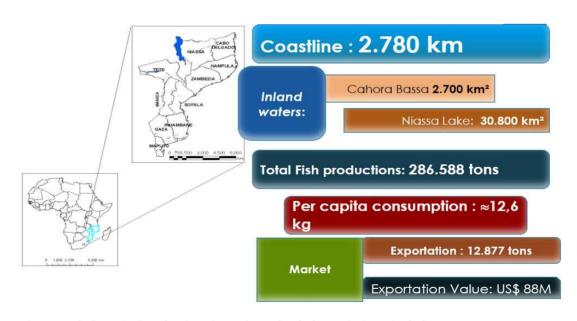
<표 3-6> 모잠비크 투자 인센티브 제도

제3절 수산업 투자환경

제조업

1. 어업별 잠재적 투자가능성

수입관세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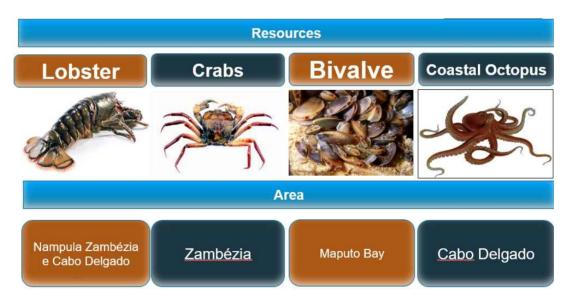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그림 3-2] 모잠비크 수산업 개요

- 〇 (근해 어업) 자원의 잠재적 생산량은 310,000톤으로 예측
- 유망어종(지역): Corvina/Mullet/Pescadinha(전 해역), Tuna/Swordfish/Marlins/Sharks (북부해역), Lobster(Nampula Zambézia e Cabo Delgado), Crabs(Zambézia), Bivalve(마 푸토 만), Coastal Octopus(Cabo Delgado)



[그림 3-3] 모잠비크 근해 어업 유망어종(계속)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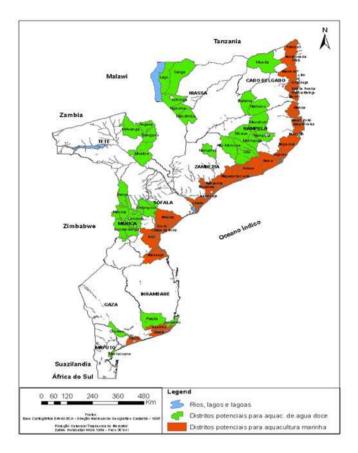
[그림 3-4] 모잠비크 근해 어업 유망어종

- O (내수면 어업) 자원의 잠재적 생산량은 47,772톤으로 예측
- 유망어종(지역): Tilápia/Utaca/Mbuca/Bagre/Kampango e Clárias(니아사 호수), Kapenta/ Tilápia/Tigre/Tchenga/Barbos/Lábios e Clárias(카호라 바사 댐)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그림 3-5] 모잠비크 내수면 어업 유망어종

O (내수면 양식어업) 자원의 잠재적 생산량은 2,000,000톤, 잠재적 양식어업 면적은 258,000 ha으로 예측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그림 3-6] 모잠비크 내수면 양식어장 적지

O (해면 양식어업) 자원의 잠재적 생산량은 1,973,000톤(어류 791,000톤, 새우 542,000톤, 해조류 640,000톤)으로 예측

	Area (ha)
Ponds	77.591,90
Cages	32.124,30
Seaweed	10.590,73
Total	120.306,93

Shrimp: Tiger, White, Flower, Fresh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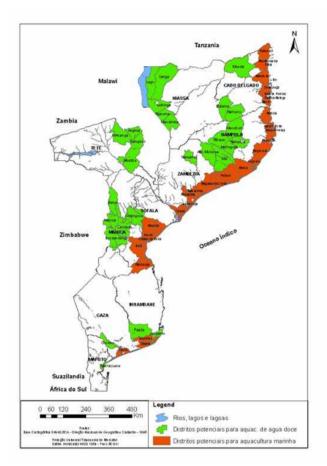


[그림 3-7] 모잠비크 연안 해면양식 유망어종(계속)

- O Develop a TUNA INDUSTRY to enhance benefits of this fishery to Mozambique
- O Investment for Development / Renewal of the FISH PORT INFRASTRUTURE
- O Investment for Development of an vessel construction Industry
- O Establish a fish PROCESSING INDUSTRY
- O Modernize ARTISANAL FISHERIES (boats/motors/gear/processing/markets)
- O Sea and Inland waters climate change & environmental research
- O Investment for a massive AQUACULTURE production (small-scale and intensive)
- O Equipment and production systems
- O Technical support and services
- O Feed production
- O Production of quality fry and fingerlings
- O Processing industry
- O Research
- O There are business opportunities in entire
- O aquaculture value chain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그림 3-8] 모잠비크 연안 해면양식 유망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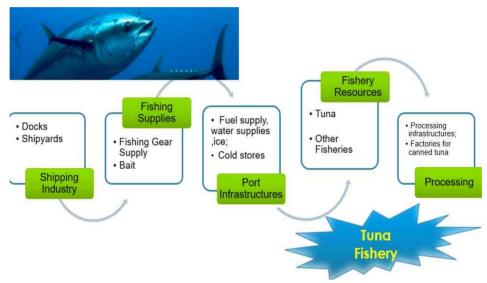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그림 3-9] 모잠비크 연안 해면 양식어장 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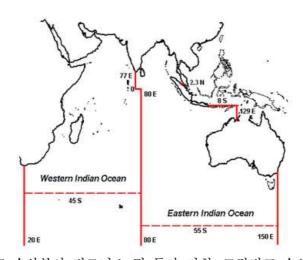
2. 어업별 투자기회

- O 모잠비크 수산업의 투자 잠재력은 높이 평가됨
- 모잠비크 양식업은 아직 미개척 영역으로 많은 비즈니스 기회 존재
-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들의 시장가치가 매우 높음
- 훌륭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춤
- O 향후 수산업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파악
- (정부) 어업을 위한 지도 제작 및 구역 배분과 어업의 잠재적 생산량 추정 필요
- (민간업계) 생산 및 상업화 전략이 필요
- (비정부기관) 다양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실시 지원과 제휴 및 협력 촉진

- O (다랑어어업) 선박, 수산물 공급, 항구 인프라, 어업자원, 가공 등 광범위한 사업 분야 고려가능
- 인도양의 잠재적 다랑어 최대어획량은 약 1백만 톤으로 20억 달러의 추정됨.
- 인도양의 남부 해역은 전 세계 다랑어 생산량의 20%를 차지함.
- O (틸라피아) 양식수산물 공급(장비, 사료 등), 생산(가두리, 수조) 가공(고부가 가치, 저장 및 보존 인프라), 유통 및 마케팅 등 광범위한 사업 분야 고려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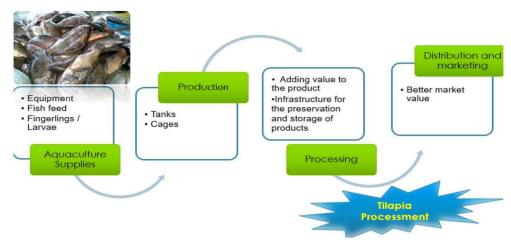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그림 3-10] 모잠비크 다랑어어업 가치사슬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그림 3-11] 모잠비크 다랑어어업 수역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그림 3-12] 모잠비크 틸라피아 양식어업 가치사슬

O (사례1) 틸라피아 수조양식 경영비 분석 결과

<표 3-7> (사례1) 틸라피아 수조양식 생산요소

수조 면적	500 sqm		
수조	1		
어류 밀집도	10 alev/sqm		
치어 중량	12 grms		
치어가격	5.00 Mt/per unit		
단위면적당 치어량	5		
주기별 사망지수	10%		
양식기간(2X)	4 months		
단위면적/주기당 입식량(kg)	2.835,00		
성어 기대중량 (kg)	0.4		
생산(마리수)	4.5		
단위면적당 기대생산량(kg)	1.800,00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표 3-8> (사례1) 틸라피아 수조양식 경영비 결과

생산		수입				
생산(kg)	1.8	1.8	구분	양	주기 1	주기 2
가격/kg	175	175	수조 건조	1	103.404,60	5.000,00
수입	315.000,00	315.000,00	운영비	1	224.445,00	224.445,00
합계	-12.849,60	85.554,40	생산비		327.849,60	229.445,60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O (사례2) 틸라피아 가두리양식 경영비 분석결과

<표 3-9> (사례2) 틸라피아 가두리양식 생산요소

가두리수	125 m3
수조수	1
어류 밀집도	80 alev/m3
치어 중량	12 grm
치어가격	5.00 Mt per Unit
주기별 사망지수	10%
양식기간(2X)	4 months
단위면적/주기당 입식량(kg)	8.100,00
성어 기대중량 (kg)	0.5
생산(마리수)	9
단위면적당 기대생산량(kg)	4.500,00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표 3-10> (사례2) 틸라피아 가두리양식 경영비 결과

생산			수입			
생산(kg)	4.5	4.5	구분	양	주기 1	주기 2
가격/kg	175	175	수조 건조	1	117.150,00	15.000,00
수입	787.500,00	787.500,00	운영비	1	613.280,00	613.280,00
합계	57.070,00	159.220,00	생산비		730.430,00	628.280,00

자료: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참고문헌

(한국문헌)

해양수산부, 201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KOTRA, 2015, 2016, 2017 모잠비크 진출전략, 보고서.

KOTRA, 2016, 모잠비크 국가정보.

(기관)

주 모잠비크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http://mz.mofa.go.kr/)

(외국문헌)

모잠비크 수산부, 2009, 2010-2019년 수산업 종합개발계획, Maputo, 55p. 모잠비크 수산연구소, 2016, 모잠비크 수산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2016년 국제수산 포럼 전문가 원탁회의 발표자료.

ADNAP(모잠비크 국립수산청), 2013, 연간 보고서, 51p.

ADNAP(모잠비크 국립수산청), 2012, 연간 보고서, 52p.

ADNAP(모잠비크 국립수산청), 2013, 모잠비크 다랑어 어업 개발 전략 계획, 48p.

ADNAP(모잠비크 국립수산청), 2014, 2014-2018년 모잠비크 해양 낚시어업 관리 계획, 56p.

IDPPE(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 2013, 2012년 영세어업 통계—주요 결과, 122p. IOTC, 2014, 2015, 과학위원회 모잠비크 국가 보고서. USAID, 2010, 모잠비크 수산업 분야 경쟁력.

부 록

부록 1.

2016년 해외투자 정보 현지조사 결과

1

현지조사 개요

□ 추진배경

- 주요 연안국에 대한 수산업 및 투자분야 등 해외수산투자 정보 수집·제공을 위해 해외투자 정보조사 추진
- 국가중요도 및 OFIS 구축현황 검토 등에 따라 모잠비크를 올해 조사대상국으로 선정
- 모잠비크 수산업·투자관련 자료수집, 전문가 동반 현지조사 추진

□ 현지조사 목적

-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및 수산양식개발원 등 관련기관 방문·면담
 - 수산업(어업, 양식, 가공, 유통 등) 및 투자진출 관련 정보 수집·문의
- 모잠비크 투자진출 지원기관 방문·면담
 - KOTRA 마푸토 무역관, 한국 대사관 등 방문하여 투자진출 현황 및 관련 정보 수집
- ㅇ 모잠비크 진출업체 면담
 - 우리나라 기업의 모잠비크 진출현황 파악, 기업관계자 면담을 통한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및 유의사항 등 현지화 정보 수집
 - * 조사 효율성을 위해 '원양어업 통계조사'와 연계하여 실시

□ 현지조사 개요

- 기간/장소 : '16.8.13(토)~8.21(일) (7박9일) / 모잠비크 마푸토, 베이라
- 출장자 : KMI 조정희 실장, 해외수산협력원 강신원
 - *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동행

현지조사 일정

일 자	일 정	내 용	
8.13(토)	16:40(SQ609)	인천(한국) 출발	
	22:05(SQ609)	창이(싱가포르) 도착	
8.14(일)	01:25(SQ478)	창이(싱가포르) 출발	
	06:10(SQ478)	요하네스버그(남아공) 도착	
	08:35(TM312)	요하네스버그(남아공) 출발	
8.15(월)	09:35(TM312)	마푸토(모잠비크) 도착	
	13:00	어항 및 부두, 창고, 어시장 견학	
8.16(화)	10:00	한국 대사관 방문	
	14:00	FAO 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SWIOFC) 방문	
	16:00	코트라 마푸투 무역관 방문	
0.17(스)	10:00	모잠비크 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IDPPE) 방문	
8.17(수)	15:00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연구소(IIP) 방문	
	06:35(TM1130)	마푸토(모잠비크) 출발	
8.18(목)	08:10(TM1130)	베이라(모잠비크) 도착	
	14:00	베이라 교민 수산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 [업체 TG PESCAS, TG Marine 방문]	
9 10(크)	08:15(TM0311)	베이라(모잠비크) 출발	
8.19(금)	10:15(TM0311)	요하네스버그(남아공) 도착	
8.20(토)	13:45(SQ479)	요하네스버그(남아공) 출발	
8.21(일)	06:10(SQ479)	창이(싱가포르) 도착	
	08:00(SQ600)	창이(싱가포르) 출발	
	15:35(SQ600)	인천(한국) 도착	

현지조사 결과(요약)

□ 모잠비크 일반현황

- (사회) 인근국가 중 유일한 포르투갈 식민지였기에 아프리카 국 가들과 긴밀도가 떨어지며, 1995년에는 영연방에 가입하였음
- (경제) 현재 모잠비크의 인프라는 부족하나,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등 자원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큰 국가임
 - 전기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발전 가능성이 크며, 기계설비 유지를 위해 태양열 등의 활용을 권장함
- (투자) 모잠비크는 투자하기에 용이한 국가이나 외국인투자 과 실송금은 1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가능함
- (항공편) 수도 마푸투국제공항에 카타르 항공(Quatar Airways)이 개 항되어 마푸투-인천 구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모잠비크 수산업 현황

- (일반) 2,800㎞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서인도양에 새 우, 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이 존재하고 있음
- (어업) 3~4년 전에는 모잠비크 EEZ 내 저서어류를 위주로 어획 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다랑어를 어획하고 있음
 - 다랑어, 전갱이, 오징어 등이 유망한 어종이나 수산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해양수산 통계도 부재함
- (양식업) 모잠비크의 내수면 양식업은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유 망한 분야이나 양어 사료가 중요한 문제
 - * 잡어(trash fish)로 만든 사료를 모리셔스에서 수입할 수 있음
 - 정부는 양식 부지를 확보하는 등 양식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모잠비크 협력사항

- (정책) 모잠비크는 환경적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추구하며, 향후 어업 관련하여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람
 - 이와 관련,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장관은 교육사업 참여 등으로 방한 시 수산관련 정부간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함

현지조사 내용

□ 주모잠비크 대사관 면담

- 일시/장소 : '16.8.16(화) 10:00~11:00 / 주모잠비크 대사관
- 참석자 : 주모잠비크 대시관 김흥수 대사, 김지훈 참사관,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기관소개) 해외수산협력원은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모잠비크 수산업 진출 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조사 중이며, 이를 통해 정보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임을 설명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 관련 과제를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본 정보조사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음
- 삼문수산은 모잠비크 규정에 따라 1,500마력 이하의 어선 8척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 어선은 150톤급 2척과 80톤, 70톤 등임
- 모잠비크는 해안선이 길고 어자원이 풍부하며, 65%는 한국으로 수출하고 35%는 현지에서 소비하고 있음
- (목적설명) 국내 모잠비크 정보가 부재하여 업계 진출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사항 등에 대한 투자 정보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사관동향) 김흥수 대사는 모잠비크에 부임한 지 2개월 되었으며, 금년 한국 수출입은행의 켈리마네중앙병원* 준공식에 참석 예정임

- * 켈리마네중앙병원은 지난 1975년 모잠비크가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 래 최대 규모의 현대식 병원으로, 전체 5천600만 달러의 사업비용 중 수 출입은행이 4천500만 달러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함
- (모잠비크현황) 이전에는 마푸토에서 베이라 이동 시 차편을 이용했으나, 현재는 내전으로 인해 비행 편으로 이동하고 있음
- (지리) 켈리마네의 주요 운송수단은 자전거이며, 범죄율이 낮고 쾌적한 지역이나 밤에는 위험할 수 있음
- 베이라는 주요 항구이며 회랑(corridor) 등 농업 지원을 요청함
- 현재 모잠비크의 인프라는 부족하나,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 량 등 자원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큰 국가임
- (역사) 인근국가 중 유일한 포르투갈 식민지였기에 아프리카 국 가들과 긴밀도가 떨어지며, 1995년에는 영연방에 가입하였음
- 모잠비크는 공산주의 국가였으나 1992년 마르크스주의 정부와 반공산주의자 세력들과의 오랜 내전 끝에 자본주의화 되었으 며, 북한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당국 내에는 현재에도 북 한의 의사들이 파견되어 있음
- (협력) 모잠비크는 중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당국을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중국과 인도는 오래 전부터 모잠비크와 협력해 왔으나, 일본과 한국은 최근에 협력이 활성화되었음
- 모잠비크 공공주택부 국립수자원관리국(DNFRH)과 KOICA는 현 재 '수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추진 중
- (종교) 모잠비크 북부는 무슬림, 남부는 기독교가 우세함

□ FAO 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SWIOFC) 면담

- 일시/장소 : '16.8.16(화) 14:00~15:00 / SWIOFC 사무국
- 참석자: Aubrey Harris 사무국장, 세계은행(World Bank)
 Daroomalingum Mauree 조정관,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목적설명) 한국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대한 국가정보가 부족하여 당국 수산업 및 투자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였음
- (기관소개) SWIOFC는 서부 인도양의 수산업을 관할하는 지역수 산관리기구로서, 회원국들은 동 위원회에 자국 어자원 양과 상태 를 보고하고 있음
- (어업) 3~4년 전에는 모잠비크 EEZ 내 저서어류를 위주로 어획 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다랑어를 어획하고 있음
- 오징어와 전갱이(horse mackerel)도 어획되나, 전갱이는 어기가 짧음
- 또한, 모잠비크를 비롯한 마다가스카르,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새우 자원량이 붕괴 중이며, 이는 글로벌 추세로 원인 분석 중
- 모잠비크는 MSC 인증이 가장 큰 현안이고 북부로 갈수록 어종이 다양하며, 영세어민들은 생계 목적으로 어업하고 있음
- (양식업) 모잠비크의 내수면 양식업은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유 망한 분야이나 양어 사료가 중요한 문제
 - * 잡어(trash fish)로 만든 사료를 모리셔스에서 수입할 수 있음
- 질병이나 부지 등 양식업에는 위험 요소도 많으며, 양식업으로 빈민층을 모두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함
- 양식업 프로젝트는 종료 시 붕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됨

□ KOTRA 마푸투 무역관 면담

- 일시/장소 : '16.8.16(화) 16:00~17:00 / KOTRA 마푸투 무역관
- 참석자 : KOTRA 마푸투 무역관 김수형 과장,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목적설명) 해외 수산업진출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매년 1개국을 선정하여 수산업 투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투자) 모잠비크는 투자하기에 용이한 국가이나 외국인투자 과 실송금은 1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가능함
- 북부에는 천연가스가 풍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3,820만 달러를 전액 투자하여 2014년 6월부터 가스 공급을 개시함
- 현재 가스 가격이 떨어져 관련 메가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어 어려운 상황이나, 2~3년 후 가격이 오른다면 재기될 예정
- 한편, 한국기업은 삼성, LG전자, 효성, KOICA, 수출입은행 등이 모잠비크에 진출하였음
- (협력) 중국은 모잠비크에 차관 및 기부 등을 통해 타국과 비교 할 수 없는 자금력을 보이고 있음
- JICA에서 건설한 어시장은 정가제로 운영하며 위생을 매우 중 시하여 현지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함
- (수산업) 당국에서 새우가 가장 많이 어획되는 곳은 모마(Moma)로 한국인 관련사업체(LEEMAR)의 가공공장이 설립되어 있음
- 다랑어, 전쟁이, 오징어 등이 유망한 어종이나 국내 수산 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해양수산 통계가 부재함
- 모잠비크는 어획량이 적기도 하지만,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항구까지의 운반비용이 상당히 큼

□ LEEMAR Sociedade Comercial Imp. & Exp. Ida 면담

- 일시/장소 : '16.8.16(화) 18:00~19:00 / 모잠비크 한식당
- 참석자: LEEMAR 이지한 부사장, KOTRA 김수형 과장,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 신원 행정원

- (업체소개) LEEMAR는 2008년 모잠비크에 진출하여, 남풀라 (Nampula) 주의 모마(Moma)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 업종 및 비중은 가공업 50%, 원양 외 기타 50%이며, 종사자는 한국인 3명, 현지인(외국인 포함) 30명
- 품목은 새우 60%, 갈치 20%, 조기 20%의 비율로 생산·취급하며, 소형 FRP선박을 이용하여 어획하고 있음
- (모잠비크현황) 한국 업체는 KOTRA 마푸투 무역관 내 사무소를 연간 400달러로 임대하는 등 투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모잠비크 수도 마푸투국제공항에 카타르 항공(Quatar Airways)이 개항되어 마푸투-인천 구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 (인천→마푸투) 매주 화, 목, 일요일 출발, 오전 1시 20분 출발,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도착(총 비행시간 19시간 20분)
 - * (마푸투→인천) 매주 화, 목, 일요일 출발, 오후 3시 출발, 다음날 오후 5시 5분 도착(총 비행시간 19시간)

□ 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IDEPPE) 면담

- 일시/장소 : '16.8.17(수) 10:00~11:00 / 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
- 참석자 : 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 Rui M. M. Falcão 조정관,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기관소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 항만 등 사회과학 분야 를 연구하고, 해외수산협력원은 한국의 해외수산자원개발 및 국제 협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 (목적설명) 모잠비크의 수산업 현황을 청취하고자 방문하였으며 본 조사를 통해 모잠비크 관련 책자를 제작할 예정임을 설명함
- (모잠비크현황) 2,800㎞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서인 도양에 새우, 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이 존재함
- 켈리마네에는 새우를 양식하는 외국인 업체가 있으나, 흰반점증후 군(WSSD, White Spot Syndrome Disease) 문제가 있음
- 또한, 수산업에는 약 300,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모잠비크에 는 노르웨이에서 자금 지원한 수산양식훈련기관이 있음
- 어업 관련하여 마푸토에는 이미 선박이 많아 베이라가 유망함
- (컨퍼런스소개) 201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아프리카에서 수 산 컨퍼런스 개최 예정임을 설명하고, 개최 시 모잠비크 측의 참석 및 협조를 요청함

□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연구소(IIP) 면담

- 일시/장소 : '16.8.17(수) 15:00~16:00 /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 참석자: 해양수산부 Agostinho Salvador Mondlane 장관, Cláudia Tomás 과장, Eugénio de Amarante António 과장, Celso Lopes 사무관, 국립수산연구소 Jorge Mário Mafuca 과장,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목적설명) 모잠비크에 한국의 대사관, 수출입은행, KOICA 등이 존재하나 수산 관련 관심 및 협력은 저조한 상황
- 이번 정보조사로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부나 업계에 모잠비크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작년에는 페루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페루로 광어 양식 등 진출한 바 있음
- (컨퍼런스소개) KMI는 대륙별 거점국 중심으로 협력 중이며, 이 전에는 주로 서부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았으나 내년에는 모잠비 크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협력이 시작되기를 희망함
- 또한,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장관이 방한하여 KMI의 교육사업 등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정책) 모잠비크는 환경적 개발을 통한 수산업 보존을 추구하며, 향후 어업 관련하여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함
- 한국도 모잠비크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베이라에서는 선박 수리를 위한 부두를 개발하고 있음
- 모잠비크는 부지를 확보하는 등 양식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협력) 모잠비크는 수산업 관련 투자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또한, 방한 시 수산관련 정부간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함

□ TG MARINE, LDA 및 TG PESCAS, LDA 면담

- 일시/장소 : '16.8.18(목) 14:00~16:00 / TG MARINE, LDA
- 참석자 : TG MARINE, LDA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이은희 과장, Archi Atsushi Endo,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TG MARINE) 삼문수산의 수산물 가공업 관련 자회사로서 지 분 한국 80%, 일본 20%의 형태로 투자하였음
- 모잠비크의 베이라에서 백합조개를 가공하고 있으며, 주요자산 은 수산물 가공 시스템과 냉동장치 및 냉동 창고
- 종사자는 한국인 1명 및 현지인(외국인포함) 80명이고, 2015년에는 기준 사업 준비로 인해 수출 및 생산현황은 없음
- (TG PESCAS) 마찬가지로, 삼문수산의 수산가공업 관련 자회사로서 100% 지분 투자함
- 주요자산은 트롤선 8척 및 어업권 8종, 수산물 가공허가권(민어 30%, 새우 30%, 기타 40% 생산·취급) 및 가공공장
- 종사자는 한국인 4명 및 현지인(외국인포함) 150명이고, 연간 50 톤 생산하여 생산금액은 약 100천\$
- (사업현황) 백합조개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도이며, 백합조개가 햇빛에의 노출 등으로 20% 가량 폐사하고 있어 하역 기계화를 통해 선도를 향상시킬 계획
- 백합조개는 일본에서 1알에 1,000엔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일 본까지 살아서 수출될 수 있도록 얼음이나 산소 주입 등 연구 중
- 모잠비크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자연 환경이 좋아 잠재력 이 큰 국가이며, 기계설비 유지를 위해 태양열 등의 활용을 권장함

붙임

현장사진



모잠비크 어시장(JICA 지원) 견학



모잠비크 어시장(JICA 지원) 견학



모잠비크 어시장(JICA 지원) 견학



모잠비크 어시장(JICA 지원) 견학



모잠비크 어시장(JICA 지원) 견학



모잠비크 어시장(JICA 지원) 견학



마푸투 부두 견학



마푸투 부두 견학



FAO 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 면담



FAO 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 면담



IDEPPE(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 면담



해양수산부 및 IIP(국립수산연구소) 면담



TG MARINE, LDA 가공공장 견학



TG MARINE, LDA 가공공장 견학



TG MARINE, LDA 가공공장 견학



TG MARINE, LDA 가공공장 견학



TG MARINE, LDA 가공공장 견학



TG MARINE, LDA 가공공장 견학



베이라 부두 견학



베이라 부두 견학



베이라 부두 견학



베이라 부두 견학



베이라 부두 견학



TG MARINE, LDA 면담

부록 2. 모잠비크 수산법

국가 공보

모잠비크 공식 간행물

모잠비크 국립 언론 공공 회사

경고

국가공보에 공개되는 내용은 매회 사용될 때마다 정식적으로 사본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 시 해당 직인 및 서명과 일반 표시 외 "국가공보에 발간"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요약

국회:

법률번호 22/2013:

수산법과 법률번호 3/1990년9월26일의 폐지를 승인한다.

법률번호 23/2013:

사법부 장관의 임기동안 조직, 구성 및 고등위원회의 기능을 조절하고, 법률번호 9/2009년03월11일을 폐지한다.

법률번호 24/2013:

행정처분의 합법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을 지도 감독하고, 법률번호 25/2009년9월 28일을 폐지한다.

법률번호 25/2013:

공공행정부의 의사 규정으로 승인

국회

법률번호22/2013년

11월01일

국회는 헌법 제17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현재의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법률번호 3/1990년09월26일, 수산법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고 결정하였다:

제목1

일반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수생 생물자원의 보호,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어업활동과 이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활동들에 대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은:

- a) 모잠비크 공화국 내에서의 어업활동과 이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활동 및 개발 하는 모든 사람들;
- b) 모잠비크 영해 내의 모든 내국민 외국민 어업종사자들;
- c) 국가에 등록된 어선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내국민들;
- d) 공해에서 어업을 하며 모잠비크를 통과하는 외국인들;
- e) 모잠비크 영해에서 어업 하는 모잠비크 어선들과 외국어선들;
- f) 제3국 영해에서의 어업;
- g) 제3국의 영해에서 어업활동 시, 제 3국의 국가 법률을 침해하지 않는 제3국 영 해에서의 어업;
- h) 모잠비크 어선의 공해상 어업;
- i) 모잠비크 내에서의 모든 양식 활동.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은 첨부된 용어집에 정의되어 있고, 용어집 또한 법에 포함된다.

제4조

(해석)

이 법은 모잠비크가 속해있는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특정 지침에 따라 해석된다.

제5주

(일반원칙)

어업과 양식업의 안보를 위해 이 법과 다른 규정들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관찰되어야 한다.

- a) 보존과 수생생물 자원 및 생태계의 적절한 사용원칙은 어업으로써의 생태계 접근방식과 본 세대를 위한 다양성, 품질, 충분한 양의 수산 자원의 가용성을 유지 및 촉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환경교육의 권리를 포함한, 식량안보의 맥락에서 빈곤율 감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로 구성된 수산관리;
- b)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기존의 과학지식의 불확실성을 계산하여, 자체 보호 및 보존 및 지속성을 목적으로 수생 생물자원의 관리, 보존 및 개발 환경 범죄 방지 시스템을 구축;
- c) 수산자원의 참여 관리 원칙은 어업인과 경제협회, 어업과 양식업에 관련한 단체들이 의존하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의 참여. 수산업 책임으로 구성되고;
- d) 식품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수산물의 수확, 처리, 가공 및 추적 배 포하고, 그 영양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질과 안전, 폐기물을 줄여 환 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 e) 유전자원의 보호 원칙은, 수생 생물자원의 유전적 다양성 보호로 구성되고;
- f) 오염자 부담 원칙은 어업과 어업에 관련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거나 예방하는 비용과 스스로 복원하는 책임으로 구성되고;
- g) 내국민들의 기본 원칙은, 어업인 들과 양식업 인들의 적절한 권리 보호, 특히 전통어장 및 영해 자원에 관련한 소규모 어업인들과 양식업인들, 준 산업과 산업의 안전한 생활과 적절한 우선적 접근으로 구성되고;

h) 협력과 제도적 조정 원칙은 수산업과 양식업의 안보를 위해 지역 및 국제기구의 기밀한 관계와 내부 분야별 정책의 조화로 구성된다.

제6조

(국가의 의무)

정부는 특히:

- 1. 자원의 지속적인 연장을 위한 위험 방지에 따라, 수생자원과 수중 해양환경의 지속적인 보호 조치와 관리의 이행을 보장한다.
- 2. 수생 생물자원과 관련한 활동하는 내국민들에 경제적 기회를 창출, 식량 안보 증대와 위한 어촌사회의 생활을 보호 및 기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수단의 구현을 촉진한다.
- 3. 독점방지를 위한 어업 및 어업 권리 부여에 대한 제도 수립을 보장한다.
- 4. 국제 협약 이행과 관련한 조건을 만든다. 특히 해양법에 관련한 유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및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73/78).
- 5. 항구 인프라 개발을 위한 관리 및/또는 투자에서 민-관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수산업의 관리 및 개발)

- 1. 정부는 수산분야의 적절한 관리 및 지방 국가 기관의 규칙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관리 기구를 설립한다.
- 2. 정부는 수산 자원의 최적화된 합리적 이용의 측면에서 수산물 및 이에 따른 보완적인 활동들을 평가, 수산분야의 발전을 촉진, 어업활동의 모니터링(감시)을 보장, 이 법과 다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2

수산업과 수산 관련업들의 활동

제1장 일반 규정

제8조

(어업 정책)

정부는 특히 아래 항목들을 고려하여 어업 정책을 승인하여야 한다.

- a) 환경과 수산자원에 따라 어업 선단의 용량을 적용하여 보존 및 관리하는;
- b) 어업활동을 모니터링(감시) 및 검사하는;
- c) 어업 및 민물. 해양 양식을 개발 및 촉진하는;
- d) 수산물을 처리 가공하는;
- e) 국가사업을 촉진하는;
- f) 수산물의 위생을 관리하는;
- a) 어업의 확장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 h) 지역 어업단체들의 참여 관리와 전통지식을 복구하는;
- i) 어업의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 i) 소규모 어업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는;
- k) 어업과 양식업을 통한 제품을 마케팅 하는.

제9조

(개발계획)

- 1. 정부는 수산업 발전계획을 준비, 채택, 업데이트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내려 촉진한다.
- 2. 개발 계획은 사회단체의 참여,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통합 및 분권화된 어업 및 이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연결하기 위한 방법에 따라 설정된다.

제10주

(수산 자원의 재산권)

- 1. 모잠비크 영해 내에 존재하는 수산자원은 모잠비크 정부의 재산이며, 이의 이용 조건은 정부로부터 결정된다.
- 2. 모잠비크 영해에서 어획되거나 수집된 수산물 혹은 모잠비크 공화국의 영토에 서 태어나거나 자라거나, 살고 있는 동물들은 모잠비크 산으로 간주된다.

제11조

(어업 및 어업의 상호 보완적 활동 구분)

- 1. 어업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a) 채취 선상에서의 가공 유무에 관계없이 어획하거나, 혹은 내수 및 해수역에 서의 수산 자원의 채취를 목표로 하는 활동;

- b) 양식 수생종을 사람이 개입하여 사육. 재생 및 유지하는 활동;
- 2. 어업의 상호 보완적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a) 변형 통조림 제조, 건조, 훈제, 염장, 냉장, 냉동 및 이외 수산물 가공과 관한 모든 작업;
 - b) 상업화 수산물의 게시, 판매와 운송;
 - c) 항만 서비스 접안 설비 관련, 수산물 또는 수산업 및 양식업을 위한 공급물 품 선적 및 하역;
 - d) 건설 및 제조 선박 건조 및 수리와 어망, 수산 장비 및 인공물 제조.
- 3. 어업 및 이에 따른 상호 보완적 활동은 이 법과 다른 규제 및 조건에 따른 허가 가 필요하다.

제12조

(수산업 활동 계획)

- 1. 효율적인 수산업 활동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계획하였다.
 - a) 수산업 지역 설정 및 제한 및 수산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선박 용량의 적절한 측정;
 - b) 현대적 및 경제적인 선박을 갖추기 위한 조선, 현대화 및 개조;
 - c) 소규모 어업과 양식업의 생산방법의 개발, 확장 및 홍보;
 - d) 수산업과 이에 따른 보완적 활동, 양식업 등 수산분야의 유지관리 기술 관련하여.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 e) 국내 선박을 위한 주요항구와 외국 선박이 접근 가능한 항구 결정;
 - f) 어업에서의 선단 확장을 위한 틀 및 국가와 협력 시 혜택 제공;
 - a) 어업의 상호 보완 산업들의 설립;
 - h) 어업활동 허가 점검;
 - i) 어업활동 허가 발급 및 점검;
 - i) 보호지역 확립;
 - k) 수집 및 어획 금지된 보호 수생종 확립;
 - I) 최대 허용 수량, 활동 기간 제한, 금어기, 어구 및 그물코 규정 확립;
 - m) 양식업 생산품의 처리 및 가공 설비 설립 허가 발급;
 - n) 어업 및 양식업 활동 점검;
 - o) 수생 자원 및 수생 환경 상태 관찰 및 모니터링(감시);

- p) 모잠비크계 회사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대책 정의;
- q) 어족 자원의 관리와 이에 관한 여러 인력들의 전문성 형성 촉진;
- r) 어업 활동 인프라에 관한 금융지원 구조 확립.
- 2. 강에 유수가 없는 기간에는 호수, 수로 및 자연저수지 등은 식품 보안을 위한 예비자원으로 여겨진다.

제13조

(인증)

정부는 시장에서의 수산물과 인간이 소비하는 관련 생산품 및 동물의 사료에 대한 인증 기준을 설립한다.

제2장

해수 및 내수 어업

제1절

어족 자원

제14조

(보존 및 관리 방안)

- 1. 어종 치수 및 최저중량, 보호 대상 어종, 금지 기간, 접근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 어업의 기술적 특징, 허용된 어법, 어업에 접근성과 어획 활동기간, 구조 그리고 어족 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수의 방안은 정부로부터 정해진다.
- 2. 보호 대상 어종의 법적으로 정의된 치수 또는 최저 중량보다 낮은 어종의 소유, 수송. 보관 및 가공. 전시 또는 판매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제15조

(수산 관리)

- 1. 정부는 탐사 중이거나 재생 중이거나 개발 초기 단계 중인 어업의 수산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 2. 수산물 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한다.
 - a) 생물학적,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경영 개발 목표;

- b) 어업과 이를 구성하는 어종. 지리적 위치 및 어업수역 분석;
- c) 어업 생태계 분석, 어종 생활 주기 및 관련 탐구전략;
- d) 고정화된 총 허용 어획량과 기간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제도와 보존 조치;
- e) 조사, 모니터링(감시) 체계 및 평가 활동.
- 3. 수산 관리 계획은 공개되며 상담은 무료이다.

제16조

(수산자원의 보존지역)

- 1. 수산자원의 보호와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전 지역이 내수와 해수역에서 선언될 수 있다.
- 2. 보존 지역은 특정목적, 재생 또는 생태계의 복원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분류된다.
- 3. 이것은 정부가 자원 보호 지역과 방식, 조건, 정의를 규정한다.

제17조

(수생 환경 보호)

- 1. 모잠비크의 영해 내의 어업과 상호 보완적인 활동 과정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물질 또는 유독성 물질, 환경을 손상이나 오염시킬 수 있는 영향과 가능성. 중독이나 수생자원의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을 금지한다.
- 2. 해상과 내륙에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활동은 관계당국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3. 오염발생시 오염자는 민사 및 형사 판결에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 이전의 환경으로 복구한다.

제18조

(희귀종의 재산권)

모든 표본, 어획되어 있는 혹은 어업 활동 중에 어획된, 과학 연구관점에서의 중요성을 가진 또는 법적 희귀종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최적의 보관조건과 그 어떤 부대비용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2절

계획 및 관리

제19조

(어업의 분류)

- 1. 어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 a) 해상 혹은 대륙. 내수 혹은 해수역으로;
 - b)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 수익성이 있거나 없는, 비상업적 어업은 생활어업과 과학연구용 어업. 실험 어업.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어업으로;
 - c) 지역, 해안, 거리 또는 높이, 어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 d) 현지인 조업, 준 산업 또는 산업, 어업 방식과 보존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 2. 정부는 어업의 유형을 분류하기 이전에 어업 지역, 선박의 유형과 기술적 사양, 자율성, 사용되는 어구의 종류, 여가 혹은 대회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어선단 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제20조

(소규모 어업)

- 1. 정부는 소규모 생산형태, 현지조업과 그와 관련된 작은 생산 활동을 개발하고 유도한다.
- 2. 농어촌 개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정부는 현지인 조업의 일반적인 라인을 정의한다. 특히:
 - a) 사회 경제의 상황과 기술적용 단계를 포함한 정책과 전략의 수립, 계획과 프로그램. 소규모 어업생산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 b) 국민의 현지인 조업활동을 위해서만 해당되는 유일한 어업 지역을 설정하고;
 - c) 소규모 어업생산 개발을 위한 전문성 형성과 어업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 d) 소규모 어업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수산자원을 이용한 영업 이익을 일부 할당하는 식의 어업 확장 활동을 촉진한다.

제21조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어업)

수산부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어업을 이 법과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관리 기록)

- 1. 특정 법률에서 제공되는 해상 등록을 제외하고 설립된 모든 기업은 어구, 모잠 비크 내 해양 및 내륙에서 활동하는 어선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 운영되는 모 잠비크 어선도 의무적으로 관리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 2. 어업 혹은 어업용으로 사용될 모든 선박과 선박이 없는 어구들은 모두 관리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등록은 어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의무이다.
- 4. 1번에 관한 요구사항, 조건 및 요소들은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제23조

(참여형 관리)

- 1. 어업 계획, 수산 관리 및 참여형 관리 모델 채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관심과 제안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설립.
- 2. 참여형 관리 모델을 적용 및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
 - a) 어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어촌 지역 사회의 권리와 계획과 관리에의 참여;
 - b) 수산부와 현지인 어업관련 어민, 선주, 상인, 유통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그리고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 간의 조율;
 - c) 지속성 있는 수산자원의 이용과 그것의 책임 있는 개발;
 - d) 지역 사회에 의해 어업이 개발된 경우 수익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 3. 정부는 참여 관리 모델을 구현하여 시행한다.

제24조

(어업활동의 분쟁)

어업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른 체계를 배재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다음을 고려한다.

- a) 상황 발생 시 복구를 보장 받기 위해 어업인들은 조기 등록과 의무적인 보험 가입;
- b) 중재위원회의 설립하고 권고 사항을 도입하여 대책을 적용;
- c) 운영자들 사이의 적절한 조정 시행;
- d) 지역 사회기관의 직무의 일환으로 참여.

제25조

(자문 기관)

- 1.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보존 및 이용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문 기관이 만들어진다.
 - a) 국가 수산관리 위원회(CNAP), 환경, 관광, 운송 및 통신, 국방, 산업 및 상업, 금융뿐만 아니라 민간 수산 협회의 대표를 포함하여 감독되는 장관이 조정하는 중앙정부 수준의 자문기구;
 - b) 수산 공동관리 위원회(CCGP), 지역 수준의 자문기관.
- 2. 국가 수산관리 위원회(CNAP)와 수산 공동관리 위원회(CCGP)는 참여형 관리 시스템 주체이며 관심 있는 모든 그룹의 대표로 구성된다.
- 3. 수생 자원 관리 자문기관의 권한과 상태는 정부의 승인된 규정에 정의되어 있다.

제3절

어업권리

제26조

(어업권의 내용)

어업권은 이 법에 관련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와 어획물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재산권을 포함한다.

제27조

(소규모 어업 보호구역)

어업영역 확장에 대한 규정 시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 전체 범위의 기준선에서부터 3해리까지는 소규모 어업, 생계형, 과학적 조사,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로 이용된다.

제28조

(내수면 어업)

- 1. 내수면 어업은 소규모 어업 및 생계형 어업, 과학적 연구,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만을 위해 이용된다.
- 2. 정부는 내수면 어업 활동을 규제한다.

제29조

(허가 및 기간)

- 1. 어업권은 현재 법에 따른 어업 협정 및 계약 규정을 제외한 범위에서, 내국민들에게 최대 20년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부여된다.
- 2. 정부는 각 어업에 따른 어업 허가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 기간, 요구사항을 설정한다.

제30조

(소유권)

- 1. 어업 권리의 소유권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a) 어업권의 타이틀, 산업과 준 산업 및 상업적 어업;
 - b) 소규모 어업을 위한 어업허가 신청;
 - c) 생계를 위한 어업과 어구의 등록.
- 2. 정부는 이 조에서 언급하는 소유권 관리 및 등록 방법을 설정한다.
- 3. 상업적 어업권은 오직 개인이나 합법적 국가 단체 및 어업종류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에게만 정부가 승인한 규제와 이 법 내에 서 부여된다.

제31조

(전달성, 양도성)

어업권은 사망으로만 전달된다.

제32조

(정지)

다음의 경우에는 어업 권리가 정지된다.

- a) 멸종위기 혹은 복원되지 않은 종이 있는 어업 지역이 참고 될 때;
- b) 사람의 건강 혹은 환경에 위험 및 오염이 입증될 경우;
- c) 불가항력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d) 권리자의 요청서;
- e) 신고하지 않고 12개월 이상 어업 권리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f) 어업 권리의 소유자가 범법행위 및 제재로 인한 경우.

제33조

(소멸)

- 1. 어업권의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a) 12개월 이상 어업권 미사용;
 - b) 법률 관련 조건 불이행;
 - c) 권리 남용으로 인한 취소;
 - d) 중 범죄. 재범. 제재로 인한 취소;
 - e) 기한 만료;
- f) 권리 반환.
- 2. 어업권 취소 결정 후, 항의할 수 있다.

제34조

(공개 모집)

- 1. 어업 수집량의 한도와 활동기간 내에서 정부는 어업권 공개 모집을 추진할 수 있다.
- 2. 공모는 국제적으로 공고되기 전에 우선 선박이 없는, 어업에 관심 있는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 3.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반응이 없을 시 외국 선사들에게 공모가 공고된다.
- 4. 공모를 통해 취득된 어업권은 부여받은 연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35조

(어업권 및 수수료 지급)

- 1. 정부는 어업권을 제공하기 위해 이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한다.
- 2. 수수료 금액은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 a) 어종의 시장 물가;
 - b) 예상 수집량과 이에 필요한 어구의 크기 및 수량;
 - c) 어업지역 및 선박 종류;
 - d) 수산 경제 및 수입;
 - e) 생산비용 및 과학적 지식;
 - f) 어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훼손.
- 3. 영세어업은 세금이 면제된다.

제36조

(어업 권리에 대한 대응)

어업권의 수혜자는 유효기간 내에 수산물 가공처리와 이외 정부로부터 정의되는 다수의 업무 처리의 의무를 진다.

제37조

(어업 협정 및 계약)

- 1. 어족자원 어획의 가용성, 어업의 관리 및 개발 계획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선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약 및 협정할 수 있다:
 - a) 모잠비크에서 어업권 획득이나 모잠비크 법적 수역 내에 조사, 실험 및 검사 목적을 가진 타국 정부와 다자 또는 양자협정;
 - b) 모잠비크와 협정 체결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 수산 업체 우선으로 어업권 제공 하며 계약 체결.
- 2. 어업과 이에 관련된 활동의 계약 내용에는 승인된 어업 규모, 어업 지역, 어획 량뿐만 아니라 성과물의 일반적인 상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이 조에서 의미하는 협정과 계약은 의무적으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계약자 협 회에 의한 모든 조치를 채택해야 하고 그들의 선박을 보장한다.
 - a) 협정, 계약의 약관 및 조건, 어업 허가 및 계약;
 - b) 모잠비크의 현재 관련 법률;
 - c) 수산물 수출을 위한 세관 및 위생 절자;
 - d) 어족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해 실시하는 과학 조사 및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수집 된 통계 및 과학적 자료의 제공은 의무적으로 협조.

제38조

(선박 용선)

- 1. 어업권리가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국내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권의 허가 및 활동에 대한 선박의 용선을 관련 당국에 임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전 항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에 대한 규칙과 절차는 정부에 의해 규제된다.

제4절

허가 발급

제39조

(허가의 발급, 정지 및 취소)

- 1. 모잠비크 법적 수역 혹은 공해와 이에 관련한 어업 운영에는 이 법과 관련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어업 허가를 부여 할 수 있다.
- 2. 전 항에 언급된 허가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선박 소유자 명으로 발급되며 그의 선박과 어구에 해당된다.
 - b) 선박이 없을 경우 어구 소유자 명의로 발급된다.
- 3. 생계형 어업은 허가가 면제되며, 어구 등록 없이 활동 가능하다.
- 4. 시험 조업, 과학조사 또는 훈련 및 전문 교육은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5. 허가 승인, 정지 및 취소는 정부로부터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조건도 정부가 결정한다.

제40조

(어선단 확대)

- 1. 모잠비크 어선단 확대, 건조, 수입 및 개조 체계와 거래는 모잠비크 정부의 규 정과 조건 하에 이루어진다.
- 2. 어선 외 다수 종류의 선박들도 전 항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된다.

제41조

(외국인에 대한 허가)

- 1. 이 법과 적용된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허가는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다.
- 2.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어업 허가를 제외하고, 외국인에게는 영해를 벗어난 범위에서의 허가가 부여되고 재 갱신기간이 1년 이하이다.
- 3. 정부는 내수 어업을 위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어업 허가 조건을 설정한다.

제42조

(어업 허가의 배정과 갱신을 위한 요구사항)

- 1. 어업 허가의 발급 및 갱신은 다음과 같은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어업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적용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37조와 같은 어업 협정이나 계약에 의한;

- b) 이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 및 가입;
- c) 적용 가능한 위생 허가 소유자;
- d) 모잠비크 해양관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선;
- 2. 또한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요구사항을 실행 할 수 있다.

제43조

(거부)

어업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될 수 있다:

- a) 승인된 어업 권리가 없을 경우;
- b) 요청된 어업 허가와 관련한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c) 신청자가 전년도부터 신청일까지 심각한 상습적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 d) 어구가 국가 수산법에 맞지 않을 경우;
- e) 보고되지 않거나 규제되지 않은 불법 활동을 한 어선, 혹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국제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의 경우;
- f) 수산부의 허가 범위에 없을 때;
- g) 규정에 의해 지정된 다른 이유.

제44조

(어업허가의 불가양도)

어업 허가는 양도할 수 없다.

제45조

(어업허가의 해지)

소유권 또는 선주 또는 선박을 제외한 어구의 소유자의 변경은 어업 허가의 자동 해지로 이어진다.

제46조

(어업허가에 대한 지불)

- 1. 정부는 가치와 대상을 설정하고 요금을 적용하여 어업허가를 발급한다.
- 2. 국가의 수익을 구성하는 요금은 어업권의 가치 계산과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을 계산하여 판단한다.

제47조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 1. 어업허가는 자체 일정에 따라 유효하며, 현재 법 및 규정에 따른 조건 및 정의하에서 갱신될 수 있다.
- 2. 어업허가는 반드시 발급년도의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제5절

어구

제48조

(낚시 장비와 인력 장비 및 그 외)

- 1. 모잠비크 법적 수역 내에서의 어업은 명백하게 어구에 대한 규제를 행사할 수 있다.
- 2. 정부는 종의 번식과 멸종을 포함하여 기술적 특성과 사용조건, 그리고 다음을 고려하여 어구를 지정 및 설정해야 한다.
 - a) 어획되는 종과 그룹의 개체 수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과;
 - b) 어업구역과 허가기간;
 - c) 친환경적 측면으로의 적용의 의미.

제49조

(어구의 신호)

어업 허가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규정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운영 중일 때, 혹은 적재할 때에 어구를 식별 및 신호하여야 한다.

제50조

(폭발물, 독성 물질 또는 감전을 이용한 어업)

어업활동에서는 운반, 이용, 폭발 성 물질의 사용 혹은 독성물질이나 감전을 이용한 어구, 수생종을 충격, 자극하거나 멸종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구 혹은 어획하기 매우 쉬운 어구들은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6절

조사와 모니터링(감시)

제51조

(조사)

- 1. 수산관리, 어족자원의 모니터링(감시), 수산업 확장활동, 양식 활동, 수산 제품에 대한 과학적인 품질기준 및 권장사항.
- 2.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하여 수산연구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a) 연구, 식별, 보존, 모니터링(감시), 국가 개발 평가, 생물자원과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
- b) 관찰. 측정. 평가 및 어족자원의 오염에 따른 영향과 위험 분석;
- c) 표준 기술의 연구 및 감사, 수산물의 위생과 기술;
- d) 생태에 미치는 영향, 기후, 경제, 해안 생태계와 강변에서의 어업활동의 사회와 문화 연구;
- e) 국가 조건에 따른 어업 및 어획 기술 연구.
- 3. 허가된 어선의 선장은 샘플러, 개발자 및 연구 기술자에게 의무적으로 동의해 야 하며 적절한 작업환경과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 4. 샘플러, 개발자 또는 기술연구원은 출하 시, 선박의 선장, 승무원 또는 기타 단체의 구성원에게 자신의 목적으로 인한 활동을 요청할 수 없다.

제52조

(수산 제품의 샘플 및 통계 자료)

- 1. 어선의 선장은 의무적으로, 규제에 의거하여:
 - a) 규정된 조건에서 통계용 서류 기입 또는 정확한 수산물 어획 및 하역 수량 정보 제공;
 - b) 요청 시 수산물 견본 제공.
- 2. 통계 자료와 수산물 어획 및 하역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제53조

(조사 지원)

- 1. 과학적 조사 작업을 위해 어선 소유자에게 선박 운용 시간 중 일부를 제공 요청 받을 수 있다.
- 2. 계획된 작업을 침해하지 않고, 상기 어선의 사용조건 및 어획물의 판매는 어선의 소유자와 수산부가 혐의한다.
- 3. 수생 자원의 과학적 조사 실행을 위해 이에 해당하는 장비와 기술적 수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제54조

(어선 모니터링(감시) 시스템)

- 1. 어선의 지속적인 감시는 인공위성, 자동탐지장비, 기타관련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탐지될 수 있다.
- 2.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은 모잠비크와 제3국의 법적 수역 혹은 공해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모든 국내 및 외국 어선에 적용할 수 있다.
- 3. 어선 감시 시스템의 적용 장치와 방법은 정부가 설립한다.

제55조

(시험 및 조사 어업)

- 1. 최대 1년으로 재발급은 같은 조건이며, 시험 및 조사 어업이 허용된다.
- 2. 국내 또는 외국어선 소유주로부터 수행한 시험 또는 연구 어업 활동 중 수집 정보와 전산 처리된 정보는 정부에게 전달한다.
- 3. 실험 및 연구 어업은 해당 허가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제3장

양식업 활동

제56조

(토지 및 수자원 이용)

양식업 개발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공공 토지 및 수자원 이용은 이에 관한 법적 제도를 따라야 한다.

제57조

(해양 및 담수양식업)

- 1. 정부는 해양 및 담수 양식업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지침과 필요한 조치를 설정하다. 특히:
 - a) 양식 어종과 생산체계의 정의;
 - b) 양식업의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 정의;
 - c) 사전조사, 실험, 제조 및 확대 계획 준비;
 - d) 어종 도입과 병해 방제를 위해 따라야 할 규정과 수칙 정립;
 - e) 양식업자가 따라야 할 규정과 조건 정립
- f) 화학제품, 사료 및 약품, 백신 사용에 관한 규정 정의.
- 2. 정부는 양식업을 위한 활동 및 설비 조건과 등록에 대한 시스템을 설정한다.

제58조

(양식 수조와 기타 설비)

- 1. 양식업을 위한 수조 등 기타 설비의 설치는 허용된다.
- 2. 산업과 준 산업 설비들은 관할 기관의 승인을 거친다.
- 3. 생계형 양식을 위한 수조 및 설비들은 승인이 면제된다.

제59조

(양식 시설 내 어업)

양식 시설 내 어업 활동은 양식 생산 절차 중의 한 단계이며 어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60조

(질병 관리)

- 1. 양식 활동의 허가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은 양식 환경, 생태계 및 공중 보건 및 수생종을 위태롭게 하는 질병의 검출 및 발생을 모니터링(감시)하는 메커니 즉이 있어야 한다.
- 2. 감염된 어종들은 이에 관한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배출은 금지된다.

제61조

(허용된 어종)

해당 규정에 명시된 조건 하에, 양식종 및 지역별 개발 활동에 따라 정의된 국내 또는 외래 어종 양식이 허용된다.

제62조

(메수)

- 1. 화학제품, 의약품, 병원균, 오염된 시료, 유기물 및 침전물이 들어있는 양식 설비 폐수는 적절한 수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제어되어야 한다.
- 2. 살아있는 양식용 수중 생물이 들어있는 폐수는 법적으로 규제된다.

제63조

(맹그로브)

- 1. 양식 시설 설치를 위한 맹그로브의 파괴는 금지된다.
- 2. 맹그로브 지역의 사용은 오직 물 공급을 위한 취수장, 수로, 고정 장치 및 작은 정박지 혹은 맹그로브가 서식지인 종 양식과 파괴된 맹그로브의 복원, 환경 기술연구 및 악영향 대책수립 용도로만 허용한다.

제64조

(허가 발급)

- 1. 양식업 설비의 건설 및 이용은 사업소개, 사전 허가, 면허발급 및 수수료 지불절차와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다.
- 2. 허가 조건, 면허발급 및 수수료 측정은 정부가 설정한다.
- 3. 생계형 양식 설비 건설 및 이용은 1항에 명시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4장

상호 보완적 어업 활동

제65조

(구성, 설치 및 허가 발급)

어업의 상호 보완적인 활동에 대한 구성, 설치 및 허가 발급의 승인은 정부의 직권이다.

제66조

(기반시설 개발)

정부는 어업 정책과 개발 계획을 받들어, 어업의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민-관 투자 사업을 촉진한다.

제67조

(공식 제어)

- 1. 정부는 공식 제어의 실현을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 취급 및/또는 가공, 유통, 상업 활동에 따른 위생과 건강 요구 사항과 품질 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설립한다.
- 2. 공식 제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a) 생산 단위별 위생 허가 발급;
 - b) 수산물 및 관련 제품의 시장공급을 위한 위생 증명발급;
 - c) 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안전을 위한 검사 및 연구.
- 3. 공식 제어와 관한 작업과 활동은 수수료를 받는다.

제68조

(항만 활동)

- 1. 어항과 이에 관한 인프라 관리 및 보안은 공기업이 실행하며, 국가 소유이다.
- 2. 항구에서 진행되는 상업 활동은 계약과 협의를 통해 민간 기관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다.

제69조

(항만 수수료)

- 1. 어항에 항만 서비스의 제공과 어업을 돕는 기타 항만 기반시설들의 이용은 수 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2. 국내와 외국 선박을 막론하고, 과학연구나 어업 감시, 경찰이나 군 또는 관련활동들의 선박은 항구 접안 및 화물취급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70조

(수산 제품의 상업 활동 및 원산지 증명서)

수산 제품의 상업 활동은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보호법과 식품 상업법을 따른다.

- 2. 정부는 적절한 품질과 위생적인 어업과 어획물의 처리로부터 생산된 식품의 국내시장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3. 정부는 잡어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 4. 원산지 증명과 건강 위생 증명서뿐만 아니라 수수료 지불 및 제출 없이는 수산 제품의 크기 및 양에 상관없이 모잠비크에서의 반출은 금지이다.
- 5. 원산지 및 품질 증명서는 산업 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따를 뿐만 아니라 수수료 면제인 최소 수량 정의는 정부의 직권이다.

제71조

(어구 및 그물의 상업 활동)

규정과 같이 사양을 따르지 않는 그물 또는 어구의 생산, 수입 및 판매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규격을 따르지 않는 그물을 사용할 시 제재 받는다.

제목3

단속, 위반 및 제재

제1장 일반규정

제72조

(단속요원의 권한)

- 1. 단속요원의 권한은 이 법에 나타나 있으며,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검사를 수행한다.
- 2. 이 법 및 다른 법률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단속요원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 a) 용이한 검사 작업을 위한 모든 어선에게 활동 중지 명령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 b) 어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탐색, 항구 또는 지역에 정박해 있는 모든 어선뿐만 아니라 모든 처리설비나 양식설비의 검사;
 - c) 어구, 선박의 어획량, 선박의 서류, 처리시설 또는 양식 시설뿐만 아니라 허가. 각종 설치된 장비들에 대한 적법한 인증서 등을 요청;

- d)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어획하거나 면허 또는 증명서 없는 활동이 의심되는 지역을 검사;
- e) 수산물 가공시설을 거치지 않은 수산 물품들의 수송 및 환적에 대한 서류 검사;
- f) 이 법 및 다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가장 가까운 항구 또는 적합한 장소에 검 사를 위해 선박의 정박 요청;
- g) 모든 용기, 냉동 창고, 고정 혹은 이동 가능한, 건조 창고의 개방을 요청 혹은 선박, 차량, 실, 설비 혹은 구획 확보를 요청;
- h) 검사, 생산설비나 설치 장비에 대한 가동 혹은 가동 절차 요청, 가능한 상황에 폐쇄 요청;
- i) 인간 소비에 부적절한 수산물 혹은 의심스러운 수산물의 유통 금지 명령;
- 3. 단속요원들이 따라야 할 규정은 정부가 정의한다.

제73조

(감독)

- 1. 모잠비크 법적 수역 내에서 실행되는 어업 점검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 2. 국가는 합동 점검을 위해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4조

(위반 사항의 구분)

이 법이 적용된 어업활동과 기타 활동들과 관련 원칙 및 다른 관련 규정 및 아래 기술된 것들의 위반은 범죄적인 위반행위로 구분된다.

제75조

(시민의 책임 의식)

어업 및 상호 보완적 어업 활동 중 환경에 해를 끼치는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을 복구해야 하며 국가나 피해 입은 제3자에게도 수산법에 규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상해야 한다.

제76조

(예방 조치)

관리 과정에서 단속 요원은 이 법과 다른 관련 규정에 따른 위반 활동을 인지하면, 예방 조치로써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a) 어선과 어선 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장비, 어구 및 어획물 압류;
- b) 수산물 가공 시설 폐쇄;
- c) 양식 시설 또는 설비 검역;
- d) 수생종의 수집 및 상업 활동 중지.

제77조

(압류 물품의 목적지)

압류된 물품들의 목적지는 정부가 설정한다.

제78조

(생산 활동에 대한 최소의 침해)

모니터링(감시) 및 정기점검 작업은 생산 활동 진행에 있어 최소의 침해를 하도록 한다.

제79조

(폭력 및 위협에 대한 대응)

단속 요원이나 샘플러 혹은 연구 기술자의 업무 진행에 폭력으로 위협을 하거나 방해를 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강제 처벌된다.

제80조

(복수 위반 행위)

- 1. 동일한 위반사항의 절차는 처벌이 기본 위반의 처벌보다 가중되어 처벌된다.
- 2. 위반이 축적되었을 때의 벌금은 누적된 만큼 적용된 벌금의 합이며, 그에 대응하는 제재조치가 적용된다.

제81조

(위반 재발)

상습위반의 경우 벌금적용의 제한은 두 배가 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조치된다.

제82조

(참여 및 통보)

1. 누구든지 불법 행위나 규정 위반을 발견할 시 권한 있는 해당당국에 통보해야한다.

2. 위반사항에 따른 절차는 Auto de Noticia와 자체 시행령에 따라 소개된다.

제83조

(위반 사항에 따른 절차의 특성)

- 1. 위반 사항에 따른 절차 소개는, 이 법의 제79조를 제외하고 행정구분상 범죄수 사기관에 권한이 있다.
- 2. 수산 분야 혹은 위임 받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정부 관리가 이 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적용한다.

제84조

(선고)

선고는 위반에 대한 절차 및 제재 조치에 따라 달라지며, 8일 이내에 제기되는 항소가 없을 시, 통지일로부터 계산된다.

제85조

(선고 이행)

- 1. 시행 가능한 최종적 제재가 집행 됐을 시 범죄자는 통보일로부터 8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대체할 수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 및 박탈당한다.
- 2.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면, 위반사항에 대한 절차는 조치 이행을 위해 Tribunal de Execuções Fiscais(세무법원)로 제출한다.
- 3.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집행은 어선의 몰수이며, 이것은 국가로 재산이 이전되는 결정이다.

제86조

(위반 행위의 시효)

- 1. 이 법이 적용한 매우 심각한 어업 위반행위(중범죄)는 3년 이내, 심각한 위반행위(중범죄)는 2년으로 발생한 날부터 계산된다.
- 2. 어업 양식 및 건강 위생 위반 행위의 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다.

제87조

(일반적 책임)

어선의 선장, 어선의 소유자, 어업권 소유자, 용선자, 선주, 수산 제품 가공 시설과 양식 시설의 소유자, 어업 종사자, 양식 및 가공업자, 운송업자, 창고업자, 개인 및 법인은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해 이 법과 다른 관련 법령 기준 따라 내려지는 모든 제재와 벌금을 이행해야 한다.

제88조

(벌금 측정)

벌금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a) 실행된 어업 종류 및 위반 행위 장소;
- b) 위반 행위 시 사용된 선박의 사양;
- c) 위반 행위 시 이용된 가공시설과 양식설비의 기술적 특성 및 크기;
- d) 범죄자가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
- e) 공중 보건, 환경 및 생태계에 입힌 손상.
- f) 이외의 관련 사항.

제89조

(통화)

- 1. 벌금 부과 및 지불은 국가 통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 2.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벌금은 자유교환가능 통화로 부과하여 지불된다.

제2장

(감사)

제1절

어업 감사

제90조

(외국 어선의 감사 절차)

어업 위반으로 인한 외국어선 체포는 해당 정부 기관으로 즉시 통보되며 이는 어선의 국가와 관련된 지역 및 국제기관들에게도 통보한다.

제91조

(박해권)

어업 검사관이 검사 중에 해당 어선이 수산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박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92조

(행정적 책임)

법에 따른 상환 청구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국가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단속요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제93조

(어획물 압류)

- 1. 압류된 어획물은 성실한 수탁자의 의무로써 위반한 어선 내에 보관해야 하며 유지 불가능할 경우에는 냉동 설비 혹은 판매 또는 보건센터, 기숙시설, 사회적 공공기관에 기부될 수 있다.
- 2. 판매했을 경우 결과 금액은 위반 절차 수행에 책임을 가지는 기관의 순서대로 입금해야 한다.
- 3. 압류물의 판매 가격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

제94조

(보증금 지불 및 환불)

- 1. 이 법의 76조 1항 기준을 따라 체포된 어선은 선장, 소유주, 어업권 소유자, 용선자 또는 대표자의 요청과 보증금 지불을 통해 즉시 해제 가능하다.
- 2. 보증금의 금액은 어업 위반행위 처리 절차 지시자의 중재를 따르며 어선 구입 비보다 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위반 행위 벌금의 최고 금액을 합한다.
- 3. 어선 반환 결정은 보증금의 보안을 위해 지불 후 48시간 내에 전달된다.
- 4. 보증금 환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이루어진다.
 - a) 사건의 종료 결정;

b) 최종 집행 시 위반자들이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벌금과 관련 비용들을 지급했을 경우.

제2절

수산물 건강 위생 검사

제95조

(수산물 건강 위생 관리)

- 1. 가공, 처리, 공급 및 상업 활동은 공식 제어를 통해 건강 위생과 품질기준의 관리를 따라야 한다.
- 2.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자가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증명을 한다.

제96조

(위생 검사)

- 1. 위생 관리 및 검사는 수산물 검사관이 실행한다.
- 2. 이 법의 제72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산물 검사관의 활동 범위는 아래 와 같다:
 - a) 생산설비 단위의 가동 및 가동 절차 및 검사;
 - b) 생산 설비의 건강 위생상태 확인;
 - c) 분석을 위한 견본 수집;
 - d) 합당한 경우 생산 설비의 폐쇄;
 - e) 동물사료와 인간의 소비를 위한 수산물의 원산지와 생산체인 관련한 전반적 인 서류에 걸쳐 검사;
 - f) 인간이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이동을 막거나 해당 설비의 활동을 일시 중지.
- 3. 필요 시 수산물 검사관에게 보건 전문가 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동행할 수 있다.

제3절

양식업 활동 검사

제97조

(양식업 검사)

정부는 수산 분야의 감독기관을 통해 양식 활동에 대한 검사를 한다.

제3장

위반 행위

제1절

어업, 양식업 및 건강 위생 위반 행위

제98조

(매우 심각한 어업 위반 행위(중범죄))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매우 심각한 어업 위반 행위(어업 중범죄)로 여겨진다.

- a) 모잠비크 법적 수역 내에서 국내 또는 외국 어선의 무면허 어업 활동 및 시도;
- b) 적절한 허가 없이. 공해 또는 제3국의 수역에서의 어업 활동;
- c) 어업 허가의 위조;
- d) 단속요원의 공식 질문 후 어선 탈취 시도 혹은 도주;
- e) 이 법 제50조에서 언급하는 물질 혹은 제품의 소유 또는 운송;
- f) 허가와 관련 없는 다른 어업 및 관련 활동;
- a) 바다거북 배제 장치의 무사용 또는 부정사용;
- h) 선장이 입출항, 어구 철수 또는 서류를 제시하라는 단속요원의 명령에 거부 행사.

제99조

(심각한 어업 위반 행위(중범죄))

- 이 법의 목적과 규정은 아래와 같은 어업의 심각한 위반 행위(어업 중범죄)에 관한다.
 - a) 선박의 사양이 맞지 않거나, 허가 없는 어구 소지 또는 사용;
 - b) 어업 활동 중 허용된 그물망 크기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하거나 잠수어업에 무 기사용 또는 금지된 어구 사용;
 - c) 그물 크기를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사용;
 - d) 금어기에 어업 활동;
 - e) 어업금지 지역이나 허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의 어업 활동;

- f) 포획 금지 종의 어획;
- a) 허용된 무게와 크기보다 이하인 어종 어획;
- h) 허용된 어획량 이상 활동하거나 제한된 활동 기간을 넘어서 활동;
- i) 허가 정보 불법 수정;
- i) 어획량, 활동기간 및 통계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 k) 설치 및 사용된 설비에 대한 정보 위조 또는 누락;
- 1) 통신설비 또는 인공위성 위치추적 장치 개조(의도적 혹은 무의식적);
- m) 이 법 제50조에 명시된 물품 소지, 사용 또는 수송;
- n) 허용되지 않은 수산물 또는 허용되지 않은 부두에 수산물 하역 또는 환적;
- o) 보존과 공해 관리에 대한 국제 조치 공해상에서의 어업 승인이 된 모잠비크 어선이 보존과 공해 관리에 대한 국제 조치 불이행;
- p) 어선의 등록이나 정체를 허위 표시하거나 은폐.

제100조

(어업 단순 위반 행위(어업 경범죄))

- 이 법의 목적과 규정은 아래와 같은 어업의 단순 위반 행위(어업 경범죄)에 관한다.
 - a) 어업허가 취득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
 - b) 관계 당국에 등록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
 - c) 감사관 또는 연구 기술사와의 협력 부족;
 - d) 선박 및 장비에 관한 일지의 기록이 누락 혹은 손실;
 - e) 선박에 어업 허가 사본 혹은 다른 법적 의무서류들의 누락;
 - f) 인공 호흡장치 허가가 없이 잠수 조업시행;
 - a)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어업관련 스포츠 대회를 열거나 금지된 대회를 시행;
 - h) 생산자가 금어기 혹은 금지된 지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거래 혹은 그 물품을 상인이 거래;
 - i) 선박의 위치관련 정보 수집 시. 거절할 때;
 - i) 기한 밖의 통계자료 공급.

제101조

(양식업 위반 행위)

- 1. 이 법의 목적과 규정은 아래와 같은 양식업의 단순 위반행위(양식업 경범죄)에 관한다.
 - a) 허용범위에 도달;
 - b) 승인된 프로젝트에 없는 설비나 작업;
 - c) 공인기관의 양식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
 - d) 맹그로브 지역을 양식 설비를 위해 사용, 교체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설비 해체;
 - e) 화학물질이 포함된 물, 병원균, 유기물질, 침전물, 감염된 표본, 병든 표본 등을 방출;
- 2. 심각한 위반 사항(양식업 중범죄)은 다음과 같다:
 - a) 사전 승인 없이 양식 설비를 건축;
 - b) 사전 승인 없이 종을 수입;
 - c) 양식시설의 외래종에 대한 검역 규정 미준수;
 - d) 허가 없이 설비 가동;
 - e) 사전 승인 없는 유전자 조작 활동;
 - f) 적합한 시설 없이 폐수 방출;
 - g) 허가받지 않은 화학약품, 의약품 사용;
 - h) 양식업 허가에 따른 설립 조건을 변경 혹은 위조;
 - i) 사전 허가 없이 야생종의 양식;
 - j) 질병 발생 미통지;
 - k) 화학물질 혹은 동물용 백신의 한계치 미준수.

제102조

(위생 건강 위반 행위)

- 이 법의 목적과 규정은 아래와 같은 위생 건강의 위반 행위에 관한다.
 - a) 위생 공정에 대한 허가 없이 설립 및 시설의 운영;
 - b) 만료 혹은 중단된 허가로 설립 및 시설의 운영;
 - c) 일반적인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시장에 배치, 건강 및 위생 증명이 없는 시장에 배치;
 - d) 구체적인 규제에서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적합;
 - e) 관련 기관에 허위 또는 위조된 기록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누락;
 - f) 관련기관 혹은 기관 직원에게 비협조적;

- g) 특정 기준에 따른 구조적 요구사항이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설비의 설립이나 운영;
- h) 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인간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수산물을 시장에 배치;
- i) 수산물 검사관을 통한 공식적인 설립 기간을 초과;
- i) 승인된 프로젝트에 표기되지 않는 설비 혹은 작업;
- k) 위생 허가에 명시된 조건을 변경 혹은 위조;

제4장

일반 제재

제103조

(제재 적용)

- 1. 이 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위반은 징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벌금으로 처벌되어 국가의 수익으로 포함된다.
- 2. 벌금은 누적되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
 - a) 소유에 있는 선박의 혹은 생산 공정에의 어획물을 압류;
 - b) 불법 어구의 압류;
 - c)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수산물의 압류;
 - d) 어업 허가, 위생 설비 허가, 양식업을 위한 허가들의 취소 또는 정지;
 - e) 제조 설비나 사업장의 폐쇄;
 - f) 어업 선박의 선장 자격을 일시 정지;
 - g) 외국 어선일 경우 정부로부터 선박 압류;
 - h) 무허가, 질병 배양 혹은 유전자 조작 위반 시 종의 압류.
- 3. 정부는 필요시 수시로 벌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4조

(매우 심각한 위반 행위(중범죄)에 대한 제재)

- 1. 이 법 제98조에 언급된 어업 위반 행위는 다음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 a) 산업적 어업에는 공공 기능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의 1150배 이상;
 - b) 준 산업적 어업에는 공공기능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의 423배 이상;
 - c) 현지인 어업에는 공공기능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의 절반 이상;

- d) 스포츠 및 여가 어업에는 공공기능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의 19배 이상.
- 2. 누적 시,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적용한다.
 - a) 어획물 및 어구 압류;
 - b) 선장의 36개월간 어업 금지;
 - c) 외국 어선일 경우 선박 압류 및 국가 명의로 자동적 소유권 변환.

제105주

(심각한 위반 행위(중범죄)에 대한 제재)

- 1. 이 법 제99조에 언급 된 위반 행위는 최저임금의 절반부터 최저임금의 120배까지 측정되며 누적 시 다음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 a) a), b), c), d), e), f), g)의 위반 경우에는 어획물과 어구의 압류;
 - b) i), p)의 위반 경우에는 어획물 압류;
 - c) a), c), e), h), j), k)의 위반 경우에는 15~60일 간의 어업 허가 정지;
 - d) a), b), c), e), k), o)의 위반 경우에는 15~90일 간의 선장의 선박 내 활동 자격 정지.
- 2. 선장의 자격 정지 제재는 현지인 어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6조

(단순 위반 행위(경범죄)에 대한 제재)

- 1. 이 법 제100조에 언급 된 위반 행위는 최저임금의 절반부터 최저임금의 80배까지 측정되며 누적 시 다음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 a) f)의 위반 경우에는 어구의 압류;
 - b) h)의 위반 경우에는 위배 된 수산물의 압류;
 - c) a), b), c), d), e), i), j)의 위반 경우에는 15~60일 간의 선장의 선박 내 활동 자격 정지.
- 2. 선장의 자격 정지 제재는 현지인 어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7주

(양식업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1. 이 법 제101조에 언급 된 위반 행위는 최저임금의 절반부터 최저임금의 70배까지 측정되며 누적 시 다음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 a) 2항의 b), c), e), j), k)의 위반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종을 압류;
- b) 1항의 b)의 위반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의 정지;
- c) 2항의 d)의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건물의 해체;
- d) 1항의 e)와 2항의 f), h)의 위반의 경우에는 양식업 허가의 취소.
- 2. 이 법의 제 101조 1항의 d)의 위반 경우에는 양식업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최 저임금 3배의 벌금.
- 3. 이 법의 제101조 1항의 a)의 위반의 경우에는 생산품의 수량에 따라 톤당 최저임금 2배의 벌금.

제108조

(건강 위생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이 법 제102조에 언급 된 위반 행위는 최저임금의 3배부터 최저임금의 80배까지 측정되며, 누적 시 다음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 a) a)의 위반 경우에는 설비 또는 사업장의 폐쇄;
- b) b). i)의 위반의 경우에는 30~180일의 기간 동안 설비 또는 사업장의 폐쇄;
- c) a), c), d) h)의 위반의 경우에는 위배 제품들의 압류;
- d) d), g), h), k)의 위반 경우에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위생 허가의 정지.

제109조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선박을 운용하여 어업을 하던 중 연결 경로와는 상관없이 밀수 또는 불법 인신매매, 독성 약물, 마약, 향정신성 물질, 총기 또는 전쟁물자, 기타 현 법에 금지된 다른 제품들을 운송하면 형사 소송 진행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산 활동 및 수산업의 상호 보완적인활동, 선장, 혹은 소유 혹은 운영이 10년 동안 금지된다.

제목4

최종 규정

제110조

(시행)

정부는 이 특정 규정들을 승인하여 어업과 양식업의 검사 및 수산분야에 180일 이내에 시행할 것을 이 법이 보장함.

제111조

(폐지 처분)

법 n.º 3/90, de 26 de Setembro는 폐지되고 이 법이 입법된다.

제112조

(이행)

이 법은 출간일 90일 후 발효한다.

2013년 5월 17일에 국회 총회에서 승인함. - 국회의장 Verónica Nataniel Macamo Dlhovo.

2013년 9월 10일에 공포.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대통령, Armando Emílio Guebuza.

첨부

용어해설

Α

Actividades complementares da pesca(상호 보완적인 어업 활동): 어획물의 가공, 마케팅, 항구 서비스,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어업용 그물 공장, 공예품, 장비 및 기타 부품.

Actividades pesqueiras(어업 활동): 어업 활동과 어업관련 작업 및 양식업.

Administração das Pescas(수산부): 수산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Afretamento(용선): 이것은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원하는 항구에서 출하하기 위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소유자와 선박 계약을 하는 것 - 어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gentes de fiscalização(단속 요원): 현재 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특히:

- a) 수산 세금, 어획물 관리자 및 합법적으로 인증된 다른 관리자들;
- b) 감시 활동 시 해상 및 세관 당국의 에이전트;
- c) 어업 감시를 목적으로 파견된 군용 항공기 및 선박의 장교;
- d)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회 기관과 공인기관.

Águas continentais ou interiores(내수): 해양활동에 벗어나 있는 강,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조수에 따라 바다와 연결되는 호수와 연못, 늪, 운하, 물웅덩이와 일반적으로 수생종의 번식이 용이하거나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

Águas interiores marítimas(내수역):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 내부에 위치.

Águas jurisdicionais de Moçambique(모잠비크 법적 수역): 해수역과 내수.

Águas marítimas(해수역): 내수 역,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연장하는 수역.

Alto mar(공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후.

Aprestos de pesca(어업 장비): 어업 활동을 위한 선박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승무원, 연료, 식료품, 물 제외. Aquacultura(양식): 재생(복구)을 목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사육, 비육, 수생종의 유지 및 개선 등의 개발활동을, 또는 생선이나 연체동물, 갑각류 및 수생식물 생산을 목적으로 한 해양양식(해수), 담수양식(내수) 혹은 반 염수양식.

Armador de pesca(어선 소유자): 개인 또는 법인이 어업 활동 및 관련 활동 운영을 목적으로 자신 혹은 제3자의 선박을 이용하여 장비 및 혹은 준비하여 진행한다.

Artes de pesca(어구): 어족자원을 포획하기 위해 준비된 모든 인공물, 기구장치, 낚시도구.

C

Captura acessória ou fauna acompanhante(잡어): 어획물 중 대상종이 아닌 또는 의도하지 않은 어획물.

Captura(어획): 모든 어업 자원의 수집, 추출, 수확, 제거 및 채취.

Comandante(선장): 등록된 선박의 승무원 중 운항, 운영 및 안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 (선장 또는 마스터, 대리인).

Concessão de direitos de pesca(어업권의 부여): 수산부에서 어업권의 소유권을 부여해주는 행정 행위.

D

Defeso(금어기): 산란 및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업을 금지하는 특정 지역이나 기간.

Direito de acesso(접근 권한): 특정 어업자원을 조사 및 탐구하기 위하여 어업권 소유를 승인 및 부여.

Direito de Pesca(어업권): 지정된 수산자원의 특정량 혹은 총 허용 어획량의 일정비율 혹은 수산 관리계획과 어업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어구 및 장비나 선박을 이용하여 어획할 수 있는 권리.

Ε

Ecossistema(생태계): 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무생물 환경에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동적 복합 시스템.

Educação ambiental(환경교육): 수산 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힘쓰기 위하여 지역 사회들 간의 경험 교환 및 교육으로 구성.

Embarcação de pesca ou barco de pesca(어선 혹은 선박): 어업이나 어업 관련 활동을 위하여 적용하거나 장비되는 것들 중 하나.

Embarcação de pesca moçambicana(모잠비크 어선): 모잠비크에 등록된 어선.

Embarcação de pesca estrangeira(외국어선): 모잠비크 어선이 아닌 어선.

Esforço de pesca(활동 기간): 특정 어종에 대한 어업 활동의 강도는 조업 단위, 선박혹은 어구와 다른 것들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어 측정되며 선박의 수, 선원의 수, 조업시간, 어구의 수, 조업 횟수로 측정된다.

Espécie alvo(대상종): 어획이 허용되었고, 잡어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어업활동이 반복되는 어종.

Espécie aquática(수생종): 일반적으로 물에 살거나 물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생물.

Espécie transzonal(전환종): 공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모두에서 서식하는 대상종.

Espécies altamente migratórias(고도 회유성 어종): 공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사이에서 계절마다 이동하는 종들.

Espécies exóticas(외래종): 모잠비크 내의 종이 아닌 동물 혹은 식물 종.

Estabelecimento de aquacultura(양식업 설립): 사육, 재생 혹은 수생종 보호와 상업용, 비상업용에 관계없이 자산과 권리를 전체를 포함한 부분.

F

Fiscal de Pesca(수산 감사): 감사 에이전트, 수산감사 전문가, 수산 감사 집행을 위한역할을 할 수 있다.

1

Infracção de pesca ou contravenção(어업위반 혹은 경범죄):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현재 법.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예방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처벌될 수 있다.

Inspecção de pescado ou de produtos da pesca(어획물이나 수산물 생산품의 검

사): 제어, 위생 및 건강 요구 사항에 따른 체계적인 모니터링(감시)과 운반, 유통 및 시장에 배치를 포함한 생산체인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Inspector de Pescado(수산물 검사관): 운송을 포함한 모든 생산 체인에 걸쳐 수산물과 부산물의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명된 감시 책임자.

Instalações de aquacultura(양식 시설): 수역이나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생성되었거나 떠 있거나 또는 침수되어 있거나, 땅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바탕으로 수산물의 재생이나 양식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설.

М

Monitorização(모니터링(감시)): 각각의 어업활동 중의 적법성과 수산물의 위생상태 등의 정보들의 수집하고 편집 및 분석하는 것.

0

Operações conexas de pesca(어업관련활동): 선박의 생산적인 어업과정과 어업활동 자체의 성과나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특히:

- a) 어획물이나 수산 생산품을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 선박;
- b) 첫 입항 전까지의 수산물의 저장, 처리 및 배송;
- c) 바다에서 어선으로의 물류 지원 및 공급 활동;
- d) 어업 구역까지의 운송;
- e) 바다에서 위의 예상 작업들을 위한 준비작업.

Ordenamento das actividades pesqueiras(수산 활동 계획): 법적 특성에 의한 특정조 치, 기술 및 관리 설계에 의하여 설정되는데, 특히:

- a) 일반 생산 어업과 양식업 분야, 어선단과 어업지역, 기본 및 이동할 항구 시설, 수 산물의 첫 판매 장소와 위생 건강관리;
- b) 어족자원의 자체 재생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따라 책임 있는 사용 보증을 바탕으로.

Ρ

Pesca(어업):

- a) 산호류 채취와 장식용 껍질 수집을 포함하여 수산물 어획활동;
- b) 수산물을 어획하기 위한 탐지 활동;
- c) 수산물 어획을 위한 준비에 관련된 모든 활동, 특히 설비나 각각에 맞는 수집 장치를 포함한다.

Pesca comercial ou profissional(상업 또는 전문 어업): 이익이나 수집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실행되는 활동.

Pesca de investigacao cientifica(과학적 조사를 위한 어업): 과학적 목적 및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어족자원의 공간분포와 양을 측정하는 어업 및 조사.

Pesca de pequena escala(소규모 어업): 현지인 어업과 준 산업 어업.

Pesca de subsistência(생계형 어업): 선박과 현지인 조업 장비들이 없이 활동을 하고,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때때로 그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등의 보조 활동을 하는 어업.

Pesca desportiva(스포츠 어업): 비전문 어민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 규칙 및 공식 규정에 따라 주최되는 대회나 선수권대회, 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포함.

Pesca experimental(시험 어업): 어업의 방법과 어선, 기술소개를 통한 어업활동의 개선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나 어업지역을 탐험하기도 한다. 또한 데모어업(pesca demonstrativa)이라고도 한다.

Pesca marítima(해상 어업): 바다에서의 활동.

Pesca recreativa(여가 어업): 아마추어에 의한 활동, 스포츠 활동 제외.

Pesca submarina(해저 어업): 사람의 잠수에 의한, 무호흡 또는 인공호흡장치를 통한, 혹은 선박의 도움이 없이 하는 어업.

Pescador amador(아마추어 어부): 레저, 취미, 관광, 스포츠와 같은 이익이 없는 수산활동.

Pescaria(수산): 어업활동을 통한 생물학적, 환경, 기술,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어업의 관리 및 개발 단위.

Pescaria fechada(중단된 어업): 신규 등록자에게 할당되지 못하는 어업제도이며, 이 것은 어업량의 증가로 연결된다.

Pessoa colectiva nacional(국내법인): 국가 영토 안에서 모잠비크에 등록이 되고 본부가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모잠비크인이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인.

Pessoa singular nacional(국내 개인): 모잠비크 시민권을 가진 사람.

Porto base ou de armamento(베이스 항구(모항)): 이곳에서 어업활동의 준비 및 시작을 포함하여 어선에 속하는 승무원의 연간등록을 한다.

Porto de pesca(어항): 어선의 접안, 수산물과 상품들의 배기, 공급, 처리, 포장 및 제품의 저장을 위한 방파제 혹은 도크 또는 특수하게 설계된 다른 위치.

Processamento de produtos da pesca(수산물 가공): 통조림, 건조, 염장, 냉동, 훈제등의 모든 처리 및 기타방법으로 포장되어 도소매를 하는 모든 수산물을 사용한 작업.

Produto da pesca(수산 어획물): 담수, 해수를 막론하고 어업 및 양식의 활동에서 어획되거나 포획 동물이나 식물, 모든 수산물 혹은 그 일부, Pescado(수산물)이라고도 함.

Proprietário de embarcação de pesca(어선 소유주, 선주): 수산부의 재산 등록 대장에 명기되어 있는 어선의 소유자(개인 혹은 법인).

Q

Quota de pesca(어획 쿼터): 일정 어선이나 일정 어민 단체에게 할당된 일정 기간 동안의 어획량 제한.

R

Rastreabilidade(추적): 대상의 출처 혹은 원산지나 도착지를, 수산품의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

Recursos pesqueiros(수산자원): 일반적으로 물에 살거나 주로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 및 식물, 수산물, 그리고 어업활동이나 양식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산물.

Reincidência(재범): 이전 제재의 최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거나 새로운 범죄나, 비슷한 심각도의 범죄를 저지른 동일한 사람

S

Salário mínimo(최저임금): 공공기능부에 의해 채택된 급여이며, 위반 행위를 한 날짜로 적용된다(벌금 측정관련).

Sistema de Monitorizacao de Embarcacao de Pesca(어선 모니터링(감시) 시스템): 어선의 위치 추적 시스템, 컴퓨터 및 위성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선의 어업활동 모니터링(감시), 속도와 방향 및 기타 데이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istema de pesca(어업시스템):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선박, 어구 및 인간, 기타장비를 결합하여 어업활동에 적용시킨다.

Τ

Total Admissível de Captura (TAC)(총 허용 어획량): 모든 수산업의 보존, 갱신 및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활동 기간 동안에 어획 가능한 총량의 한도.

Total Admissível de Esforço (TAE)(총 허용 조업 기간(TAE)): 조업 기간 제한은 측정된 기간만 조업이 인정된다.

٧

Veda(금지): 유생의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어업 금지.